

##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물류 동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

2021. 5. 26(수)

### 〈 목차 〉

1. 국내외 물류 동향·정책 정보 제공 웹사이트
2. 세계 각지 조선소/항구별 상황
3. 주요국 EMS 특송현황
4.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주요국 조치 현황

“융복합 시대, 미래무역의 글로벌 리더 한국무역협회”  
— KITA, Smart BRIDGE to the Future Trade

- ※추가로 필요한 물류 동향 정보 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수출입 물류에 대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 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yjw0918@korea.kr](mailto:yjw0918@korea.kr), 044-203-4022)
  - ②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kscn@kita.net](mailto:kscn@kita.net), 02-6000-5628)

1

## 국내외 물류 동향·정책 정보 제공 웹사이트

| 구 분 |  | URL   |
|-----|--|---|
| 국내  | 민·관 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a href="http://www.ielsc.or.kr/">http://www.ielsc.or.kr/</a>   |
|     | 정부 지원책 지역별/키워드별 조회 (정부24)  | <a href="https://www.gov.kr/portal/coronavirusPolicy/list/svc/grp">https://www.gov.kr/portal/coronavirusPolicy/list/svc/grp</a>   |
|     | 국내외 항공 운송 동향 (자료: 한국항공협회)  | <a href="https://www.airport.go.kr/covid19/covid19-1.jsp#global2">https://www.airport.go.kr/covid19/covid19-1.jsp#global2</a>   |
| 전세계 | 해운 COVID-19 Port Restrictions<br>(자료: Wilhelmsen)                    | <a href="https://www.wilhelmsen.com/ships-agency/campaigns/coronavirus/coronavirus-map/">https://www.wilhelmsen.com/ships-agency/campaigns/coronavirus/coronavirus-map/</a>   |
|     | 항공 COVID-19 Air Cargo Operations Status<br>(자료: IATA)                | <a href="https://www.tact-online.org/covid-19">https://www.tact-online.org/covid-19</a>   |
|     | COVID-19 Airport Status<br>(자료: ICAO)                                | <a href="https://www.icao.int/safety/Pages/COVID-19-Airport-Status.aspx">https://www.icao.int/safety/Pages/COVID-19-Airport-Status.aspx</a>   |
|     | 육상 국경 통제조치 현황<br>(자료: UNECE)   | <a href="https://wiki.unece.org/display/CTRBSBC/Observatory+on+Border+Crossings+Status+due+to+COVID-19+Home">https://wiki.unece.org/display/CTRBSBC/Observatory+on+Border+Crossings+Status+due+to+COVID-19+Home</a> |
|     | COVID-19 Temporary Trade Measures<br>(자료: ITC)                       | <a href="https://www.macmap.org/en/covid19">https://www.macmap.org/en/covid19</a>   |
|     | 세계기구별 COVID-19 대응 정책 데이터베이스<br>(자료: WTO TFAF)                        | <a href="https://www.tfafacility.org/covid19-trade-facilitation">https://www.tfafacility.org/covid19-trade-facilitation</a>   |
| 유럽  | 전세계 확진자 수 현황 (자료: 존스홉킨스 대학)  | <a href="https://coronavirus.jhu.edu/map.html">https://coronavirus.jhu.edu/map.html</a>   |
|     | 물류 국경 간 트럭운송 소요시간 동향(자료: Sixfold)                                    | <a href="https://covid-19.sixfold.com/">https://covid-19.sixfold.com/</a>   |
|     | 국가별 물류 관련 동향 (자료: OECD ITF)  | <a href="https://www.itf-oecd.org/">https://www.itf-oecd.org/</a>   |
| 미주  | 물류 국가별 물류 관련 동향 (자료: EU 화주협의회)                                       | <a href="https://europeanshippers.eu/">https://europeanshippers.eu/</a>   |
|     | 물류 트럭운송 관련 연방대응 및 지침, 규제, FAQ<br>(자료: American Trucking Association) | <a href="https://www.trucking.org/COVID19">https://www.trucking.org/COVID19</a>   |
|     | 기타 미국/캐나다/멕시코 실시간 국경 통과 시간<br>(자료: 미국관세국경보호청)                        | <a href="https://bwt.cbp.gov/">https://bwt.cbp.gov/</a>   |

## 2

## 세계 각지 조선소/항구별 상황 (자료 : 한국선급, 5/17 기준)

※ 하기 정보는 한국선급의 관할지부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서 고객의 검사업무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오니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대사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Nationality | Branch Office | Information  |
|-------------|---------------|--|
| China       | China HQ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정책 : 엄격한 통제 유지, 외국인 입국제한 지속, 대부분의 포트에서 외국인은 승선 불가, 신규 확진자 발생 양상에 따라 정책 급변</li> <li>- 한국에서 중국입국 시 코로나 핵산결과 검사 필수 → "2회 검사(핵산 1회 + 혈청 1회)" + "중국 대사관 발급 건강 QR코드(HS 또는 HDS) "</li> <li>=&gt; 상세사항은 주 대한민국 중국대사관 확인 요망</li> </ul>  |
|             | Dalia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03.16일 현재 따리엔 1개의 위험지역도 없음</li> <li>- 핵산검사 양성증명서 휴대 후 외부(국외포함) 이동 가능</li> <li>- 대부분 항구 승선 불가(판진, 따리엔, 진조우)</li> <li>- 천진/황화 : 7일 이내 핵산검사 증서 보유시 승선가능, 상세 사항은 대리점을 통해 확인 요함</li> <li>- 징탕 : 백신 접종자 승선 가능하나 하선 후 14일간 지정된 장소에 격리</li> <li>- 차오페이디엔 : 백신 접종자 승선 가능하나 하선 후 14일간 집에서 자가격리</li> <li>- 바유췬 : 백신 접종자 승선 가능하나 거주구역 진입 및 선원과 접촉자는 하선 후 14일간 지정된 장소에 격리해야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24시간 내 핵산 검사 필요</li> </ul> |
|             | Qingda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포트에서 한국인 검사원 승선불가, 일부포트는 현지검사원도 승선가능여부는 CASE BY CASE로 지정된 AGENT 통해 확인</li> <li>- 수리 조선소의 경우, 외국인 입국금지로 인해, 한국에서 감독이 선원신분으로 배에 승선하여 중국으로 입항 후 검사 또는 현지 한국에이전트를 통해 검사 수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ingdao Port : 승선불가</li> <li>- Rizhao Port : 수수료 요구 200 ~ 500\$</li> <li>- Donging Port : 1주 격리</li> <li>- Dongjiakou Port : 매우 어려움</li> </ul> </li> </ul>                           |
|             | Nanji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iangsu 성 관내 항구 외국인(한국인 포함) 현조선 승선 불가</li> <li>- 외국에서 난징으로 입국 시 28일 격리시행 (호텔 격리 14일 + 자가격리 14일)</li> <li>- 연운항 2021.02.19 이후로 백신 접종 이력이 없으면 해당 항만의 출입 및 승선 불가</li> <li>- 외국인 백신접종 가능</li> </ul>   |
|             | Shangha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입국금지에 따른 전문공급업자 및 기술서비스 엔지니어의 업무 불가로 원활한 검사에 어려움 발생</li> <li>- 한국인(외국인) 현존선 승선 검사 불가</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선: 검사 시 특별한 조건 없음</li> <li>- 현존선 검사/심사 곤란, 항구에서 승선 검사 불가능<br/>기존에는 승선이 가능한 부두의 경우 핵산결과지만 요구하였지만 최근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음.</li> <li>- 승선 중 방호복 착용 필수</li> </ul>   |
|       | Ningb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접안 3일 미만 선박 : 출항이후 3일 경과후 조선소 접안가능<br/>한국 접안 3일이상 7일미만 선박 : 출항이후 1주일 경과후 조선소 접안가능 한국에서 30일 이내 선원교대선박의 경우 조선소 입항전 외항에서 4주 대기 (한국에서 감독 승선이 불가능 할것으로 판단됨)</li> <li>- 조산지역의 경우, 외국에서 입국한 감독은 입국 도시에서 14일 격리 후 조산지역에서 추가 7일 격리 실시</li> <li>- 개별 조선소에서 실시한 핵산검사에서 양성반응 10인 이상이거나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선원 10명 이상 승선 선박 14일 접안 금지,<br/>해당 조선소에서 추가로 10인이상 양성 발생시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선원 10명 이상 승선 선박 28일 접안 금지.</li> <li>- 영국항에서 조산시로 바로 입항선박 조선소 접안 금지, 1개월내 영국항 기항선박 접안금지</li> <li>- 외국에서 선원 교대한 선박은 선원교대일 기준으로 만30일 이후 조선소 입항 가능 / 인도, 필리핀, 러시아 출항 선박은 출항 다음날부터 만 14일 경과후 조선소 입항 가능</li> <li>- 지난 3개월 동안 인도, 방글라데시 입항 선박 및 3개월 이내에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선원의 교대가 있는 경우 및 교대 선원이 인도 및 방글라데시를</li> <li>- 경유한 경우 조선소 접안 보류</li> <li>- 3월28일 이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이란, 필리핀, 터키, 브라질 입항 선박 및 해당 국가에서 선원 교대가 있는 경우 6월28일 이후 조선소 접안여부 결정</li> <li>- 4월 12일 이후 태국, 미얀마, 베트남 기항선박 잠정적 입항심사 정지</li> <li>- 수리조선소의 백신접종여부 확인 시작</li> </ul> |
|       | Guangzho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항만 출입금지</li> </ul>  |
| Japan | Toky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신규입국 금지 (2021년 1월 21일 부), 3/21 이후에는 일부(운동선수 등) 입국 허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보 발령 시 출장 등 타 현 이동자숙 요청, 야간이동 자숙, 3밀(밀집, 밀폐, 밀접) 금지, 출/퇴근 만원열차 이용자제, 사회적 거리두기</li> <li>2) 감염자 급등으로 인하여 도쿄,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및 아이치에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함. (2021.04.25 ~ 5.31)</li> <li>3) 만연방지등중점조치 발령을 일부지역 추가 및 5/31일까지 연장</li> <li>4) 도쿄에서 선원교대자가 하선을 못한 경우가 발생한 바 선원교대 계획시 필히 대리점을 통해 확인이 요구됨.</li> </ol> </li> </ul>   |

|             |           |   |
|-------------|-----------|---|
|             |           | <p>[태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금지(추가 공지 시까지)</li> <li>- 2021년 4월 말부터 하루 2,000명 정도의 확진자 발생</li> <li>-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 재연장(~2021.05.31)</li> <li>- 마스크 착용 의무화</li> <li>- 2021년 5월 1일 부터 백신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호텔 강제 격리 10일</li> </ul> <p>[방글라데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금지(추가 공지 시까지)</li> <li>- 원격검사 가능</li> <li>- 다카- 중국, 중동, 말레이시아, 싱가폴 등 일부 국제선 항공기 운항 중이나, 태국 직항편은 운항중단 (12월 말 현재)</li> <li>- 72시간 내 음성확인서, 14일간의 자가격리 등을 준수할 경우 제한적 입국가능, 외국인(업무목적) 14일 이내 출국도 가능함. (12월 5일부터 적용)</li> </ul> <p>[미얀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금지(추가 공지 시까지)</li> <li>- 원격검사 가능</li> <li>- 회사, 기관 직원 재택근무명령</li> </ul> |
| Vietnam     | Hochiminh | <p>[베트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진자 발생 지역으로의 지역간 이동 시 건강검진표 또는 코로나 검사 결과서 제출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입국자에 대하여 21일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및 코로나 검사</li> </ul> </li> </ul> <p>[캄보디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봉쇄, 검사 불가</li> <li>- 당국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병원, 생필품 구입)를 제외하고 주(Province)간 이동금지</li> </ul>   |
| Indonesia   | Jakar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li> <li>- 조건부 검사가능(코로나 검사, 허가증 준비)</li> <li>- 대규모 사회적 제한(5월 17일까지)으로 지부 재택근무 연장(검사업무는 가능)</li> </ul>   |
| Philippines | Manil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봉쇄, 외국인 입국 금지</li> <li>- 지역 및 포트 상황에 따라 검사가능(루손섬 일부 가능)</li> <li>- 확진자 증가에 따라 마닐라 및 인근 지역 total lockdown(3/29-5/14)이며 추이에 따라 연장</li> </ul>  |
| India       | Mumbai    | <p>[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 전체 국제항만이 있는 9개의 State 중 6개의 State가 Full Lock Down을 2021.05.31일 까지 시행</li> </ul>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기를 제외한 국제선 항공운항 중지 및 학교/교육기관에 대한 휴교</li> <li>- 모든 Priveate office 재택근무</li> <li>- 통행증부착의무화 시행,</li> <li>- 검사/심사</li> <li>- 모든 항만당국이 승선허가를 받는데 COVID Test 음성결과를 요구함,</li> <li>- 모든 여행객은 온라인으로 여행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긴급한 검사/심사 입회의 어려움이 있음.</li> <li>- 일부 State는 완전 Lock Down되어 검사/심사 입회 불가함.</li> </ul> <p>[몰디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개방, 검사 불가, 관광객 입국허용</li> </ul> <p>[스리랑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월부터 일부 입국 허용하나 입국전 PCR 제출, 입국후 호텔 대기 PCR 검사 후(2주간, 3차례) 결과에 따라 이동 가능. 입거 외에는 검사 불가</li> <li><b>- 5/5일 이후 인도에서 14일 이상 체류했던 사람은 스리랑카 입국 거부</b></li> </ul> |
| Singapore | Singapore | <p>[싱가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li> <li>- 국경 봉쇄, 검사 가능</li> <li><b>- 5월 8일부터 Phase 2로 하향</b></li> <li><b>- Jurong Bulk터미널은 외부인 출입금지이며 PSA컨테이너 터미널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음.</b></li> </ul> <p>[말레이시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국민 및 해당 외국인 입국 가능(단, 사전 입국허가 요망)</li> <li>- 2021년 1월12일부터 3월31일까지, LOCK DOWN (State내 district간에도 이동 불가), 말레이시아 내 검사/심사 서비스 제공 불가</li> </ul>  |
| Australia | Sydney    | <p>[호주, 피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li> </ul> <p>[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 14일 자가격리</li> </ul>  |
| Hongkong  | Hongkong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콩 국적자 및 거주증 소지 외국인 제외한 입국 및 환승금지, 검사 가능</li> <li>- 자가 격리자 지정된 호텔에서 21일 격리(기존 14일에서 21일로 격리기간 연장, 입국시 호텔 21일 예약확인서 필수, '20.12.24부터 시행)</li> </ul>  |
| Taipei    | Taiwan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칙적으로 대만 국적자, 외교 및 거주증 소지 외국인만 비자발급과 입국을 허용. 외국인의 경우 '20.06.29일부터 관광 및 사회방문을 제외하고 비자신청 가능함.(단, 음성결과서 소지 등 제한조건 있음)</li> <li>2.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중이며,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미 착용시 벌금 NTD 3,000~15,000</li> <li>3.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 NTD300,000~NTD1,500,000</li> <li>4. 병원, 관공서, 슈퍼마켓 및 학교 등 정상적으로 운영중이며, 모임 제한없음.</li> <li>5. 마스크는 주당 9매/1인 구입 가능함.</li> <li>6. 대만정부에서 최근 한국의 감염자가 100여명 이상 증가함 따라</li> </ol>  |

|           |                         |   |
|-----------|-------------------------|---|
|           |                         | <p>대만정부에서 지정한 "중위험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됨.</p> <p>7. 전 세계적인 감염자수 증가에 따라 대만정부에서도 "겨울방역 강화방안" 12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모든 의료기관 및 대중 운송 등 8개 장소 마스크 착용 전면 시행함.(강력단속 및 고액의 범칙금 부과 시행)</p> <p>8.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 격리자 필수(호텔 및 에어비엠비 등 격리 불가) 지속 시행함.</p> <p>9. 최근 해외 입국자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증가 및 국내 확진자 증가에 따라 정부의 엄격한 규제 및 자가격리 요건 강화(14일 자가격리 + 7일간의 자기관리) 시행</p> <p>10. 대만 타이페이, 타오위안 및 국제공항 인근의 국내 확진자 증가로 인하여 특별지역 지정(특히 타오위안)</p> <p>11. 대만정부에서는 3.22일부터 병원 및 의료 관계자를 처음으로 백신접종을 시작하였으며 일반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접종 계획은 현재까지 없음</p> |
| Canada    | Vancouv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 봉쇄 미국-캐나다 ( 2021년 4월 21일 까지)</li> <li>- BC(British Columbia)주 및 온타리오주 : 2차 유행 선언</li> <li>- 확진자 급증, BC주 현재 Semi Lockdown</li> </ul>   |
| America   | Los Angeles/<br>Seattl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멕시코 국경 봉쇄</li> <li>- 캘리포니아 주를 제외한 이동제한 없음, 검사가능</li> </ul>  |
|           | Huston/<br>Panam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nama :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PCR test(코로나검사) Cert.가 필요, <b>남미에서 입국자는 3~5일 격리조치함.</b></li> <li>- Houston : 미국 내 관할지역 Port만 입회 (해외출장 불가)</li> <li>- <b>해외입국자는 PCR Test 결과가 필요함</b></li> <li>- 각 터미널 또는 방문지에서 14일 이내 감염자와 접촉 여부 및 출입국 기록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 출입이 불가함</li> <li>- 파나마 이외의 대부분 중남미 국가 검사 입회 불가 (멕시코, 에콰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일부 지역은 입회 가능 여부 확인 필요)</li> </ul>  |
|           | New Orlea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State ) 간 이동 금지 및 제한하는 곳이 많음, 검사가능</li> </ul>  |
|           | New Yor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미국-캐나다 간 여행가능하나 캐나다 도착 후 8일간의 자가격리 실시</b></li> </ul>  |
| Brazil    | Sao Paul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입국자 PCR test 및 2주간 자가격리</li> </ul>   |
| Argentina | Buenos Aires            | [아르헨티나]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입국자 PCR test 및 2주간 자가격리</li> </ul>   |
|           |                         | [칠레]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출입금지 (4월 30일까지)</li> </ul>  |
| Greece    | Athens                  | [우루과이]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여행에 귀국한 모든 사람은 PCR Test한 날 부터 10일간 자가격리</li> </ul>  |
| Greece    | Athen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ree moving around Greece. Restriction traveling to/from few</li> </ul>  |

|   |            |  |
|---|------------|--|
|   |            | <p>areas (e.g. TURKEY, AMERICA) depending on the regulations of the destination country. All domestic transportations can be freely used. Mask use is mandatory in all indoor places including all offices and in outdoor places where distance of 1.5 meters can not be kept. 40% of office employees of each company shall be home-working. Home working shall be officially declared to Gouvernement's system as mandatory policy. Gatherings up to 9 people is allowed. There are local additional measures depending on the area (e.g. mandatory mask wearing also in outdoor places). Home working is mandatory to office employees depending on work type. Most flights available. Covid test required for travelers or not depending on origin country. Special form to be prepared 24 hour before travelling to Greece. Random Covid Tests are conducted in the Greek airports for travellers coming from abro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OCK DOWN In Greece starting from 7/11/2020. Moving only allowed after sending SMS or by having special permission for special reasons and for business purposes. Restriction to abroad and domestic traveling. Mask use is mandatory everywhere. All shops (except food stores, gas stores and drug stores) to be closed for 3 weeks. 50% of office employees of each company shall be home-working. Home working shall be officially declared to Gouvernement's system as mandatory policy. Gatherings not allowed.</li> </ul> |
| Egypt,<br>Rumania,<br>Bulgaria,<br>Malta,<br>Cyprus etc |            | <p>[Egyp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l travellers to Egypt should hold ( –ve)PCR test Certificate in English/Arabic language issue date max. 72 hours from travelling date.</li> </ul> <p>[Rumania, Bulgaria, Malta, Cypru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velling restrictions implemented. Negative Covid test required for entering the country in most cases.</li> </ul>  |
| Denmark   | Copenhage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vel from EU and Schengen countries, as well as the UK whichever are categorized at a yellow risk level has been lifted from 27<sup>th</sup> of June. In addition, countries other than mentioned above confirmed as yellow risk have been accepted to visit Denmark (Including Korea)</li> <li>– Residents from high risk countries, who are able to enter due to one of the worthy cause rules, now need a negative COVID-19 test not more than 72 hours old to be able to enter Denmark.</li> </ul>  |
| Norway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ople arriving in Norway from Red zone countries are to be 14 days of quarantine mandatorily (Including Copenhagen Denmark)</li> </ul>   |

|   |         |   |
|---|---------|---|
| Swede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limits</li> </ul>   |
| UAE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re is the movement restriction between "Abu Dhabi" and other Emirates (Dubai etc.) To enter Abu Dhabi, it is required COVID Negative Test Result within 48 Hours.</li> <li>– Dubai is open for all with some requirement of COVID-19 (On-arrival PCR Test etc.).</li> </ul>   |
| Arabia Phe,<br>Persian<br>Gulf,<br>Red Sea,<br>Oman Gulf<br>etc | Dubai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border of all country has been closed since the start of COVID Pandemic. It is open for the people who have the valid VISA (Residence).</li> <li>– The short term VISA (Business trip) is still not possible to get for all country except below;</li> <li>1. Bahrain : it is possible to go "Bahrain", the country is open with some requirement of COVID-19(On-arrival PCR Test etc.) (Korean – VISA on arrival, Business trip possible)</li> <li>– For the survey of those country, check the case by case with "the local agent" and "Consulate of Korean in each country".</li> </ul>   |
| Republic of<br>South<br>Africa                                  | Durba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rder blockade</li> <li>– Restrictions on traffic are lifted except for night. (Request to restrict passage as much as possible)</li> <li>– Need a business pass when moving to another city.</li> <li>– When access to port and vessel following conditions shall be satisfi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ocuments requested by port authorities</li> <li>* Letter of agency permission</li> </ul> </li> <li>– Lockdown moved to level 1 from 1 October 2020.</li> <li>– Currently, international travel has been partially held since October 1, and the border blockade continues.</li> </ul>  |
| South area<br>of Africa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vel between countries adjacent to the border is allowed for essential workers.</li> </ul>   |
| Germany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travel/going out restriction in place, Public transportation is available but limited number of flights, No entry control for the citizens/residents in Eu and some countries including Republic of Korea.</li> </ul>   |
| Poland,<br>Hungary,<br>Russia,<br>Finland,<br>Czech etc         | Hamburg | <p>[Pola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try from all neighboring EU member states is possible without restrictions. Border controls now only take place on the borders with Ukraine, Russia and Belarus. Poland has been classified as a risk area since October 24th, 2020.</li> </ul> <p>[Hunga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ungary will continue to carry out EU internal border controls until October 31, 2020. Budapest Airport is open. International air and rail traffic is generally available, but cross-border rail traffic between Budapest and Belgrade is suspended until further notice. New entry requirements have been in effect for Hungary since September 1, 2020. Entry is for i.a. Germans then basically no longer possible.</li> </ul> |

|         |          |  |
|---------|----------|--|
|         |          | <p>[Russ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ussia is strongly affected by COVID–19. Regional focuses are Moscow and St. Petersburg. Russia is still classified as a risk area, which results in a quarantine obligation and a mandatory PCR test when entering Germany. Travelers are also generally no longer able to enter and leave the country via the land b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including the border to Belarus. When boarding an airplane with Russia as its destination, foreigners must provide proof of a negative COVID 19 PCR test, even if they only want to pass through in transit. The test result must have been determined not earlier than three calendar days before the departure of the aircraft and must be printed out in Russian or English. Non–Russian citizens who enter Russia for business purposes are obliged to isolate themselves in the apartment for 14 days afterwards</li> </ul> <p>[Finlan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erson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ay continue to enter the border. Since October 1, 2020, the 14–day self–isolation can be waived if travelers coming from an epidemiologically risk area can show two negative COVID–19 tests. The first test must be taken before entry and must not be older than 72 hours. The second test must be done 72 hours after entry.</li> </ul> <p>[Cze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Czech Republic is now strongly affected by COVID–19. In all parts of the country, including the border regions to Germany, the number of infections has recently risen sharply. Nationwide, the incidence is far more than 50 cases per 100,000 inhabitants per seven days, which is why the entire Czech Republic has been classified as a risk area. German citizens and all travelers with permanent residence or domicile in a country in the green category (according to the traffic light system introduced in mid–June) can, in principle, enter the country without giving reasons if they have not spent more than 12 hours in a country in the red category during the last 14 days.</li> </ul> |
| Turkey  | Istanb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can perform all survey and audit in turkey. However it can be visited at the Shipping Company</li> </ul>   |
| U.K.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re is a movement restrictions of traveling to Ireland, Iceland due to self–isolation for 14 days</li> </ul>  |
| Ireland | Lond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lf–isolation for 14 days when traveling from Spain, Belgium, France, Malta, Monaco, the Netherlands, Portugal(except the Azores and Madeira), Greece, (except Greek islands: Corfu, Crete, Kos, Rhodes, Zakynthos), Italy, Germany, Sweden, Denmark</li> <li>– England lockdown from 5 November</li> <li>– Wales lockdown from 9 November</li> <li>– (Ireland) All arrivals from overseas locations, except those coming from a country or region categorised as ‘green’ under the EU traffic light scheme, are asked to restrict their</li> </ul>  |

|  |        |  |
|--|--------|--|
|  |        | movements for 14 days on arrival into Ireland.   |
| Spain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st July~ Release of 14 days of self-isolation for foreign entry passengers.</li> <li>– If there is related documents for COVID-19, can access the port.</li> <li>– Restriction Movement: Madrid is under lockdown, entering and leaving the city is restricted until 9th Nov, a nationwide nightly curfew is in place (0:00~06:00).</li> </ul>   |
| Portugal,<br>Moroco                                    | Madrid | <p>[Portuga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lease of 14 days of self-isolation for all local/foreign entry passengers from 1<sup>st</sup> July (Passengers must conduct a negative test within 72 hours prior to disembarkation or they may stare upon arrival)</li> <li>– For access the some ports in Portugal, COVID-19 test results are required.</li> </ul> <p>[Moroc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rder blockade(Until further notice)</li> <li>– Prohibition of foreign entry, health emergency</li> </ul>  |
| Italy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order blockade(gradually opening)</li> <li>– Permission to enter Italy by residents of 14 countries, including Korea(with self-quarantine 14 days) from 1st July</li> <li>– Submission the report of infection, quarantine : from Spain, France, Belgium, Netherlands, UK, etc</li> <li>– Emergency decree in Italy</li> <li>. Period : 06.Nov. ~ 03.Dec.</li> <li>. The region located Milano Office was classified as Red (high risk) zones.</li> <li>. Restrictions on movement (except for work, health, and other essential reasons)</li> <li>. Restricted access to this area</li> <li>. Government website : <a href="http://www.governo.it/it/articolo/domande-frequenti-sulle-misure-adottate-dal-governo/15638">http://www.governo.it/it/articolo/domande-frequenti-sulle-misure-adottate-dal-governo/15638</a></li> </ul>   |
| Croatia,<br>Slovenia,<br>Swiss,<br>Tunisia,<br>Austria | Milan  | <p>[Croat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li> <li>– Fill out the immigration report before entering the country.</li> <li>– Permission to enter from Korea without self-quarantine</li> <li>– Submission the report of infection issued within 48 hours from Korea</li> <li>– Government website :</li> </ul> <p><a href="https://mup.gov.hr/uzg-covid/english/286212">https://mup.gov.hr/uzg-covid/english/286212</a></p> <p>[Sloven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li> <li>– List of countries subject to quarantine : from Spain,France(some region), Belgium, Croatia, France, Greece(some region), Italy, Netherlands, Spain, Switzerland, UK, etc</li> <li>– Permission to enter from Korea without self-quarantine</li> <li>– Government website :</li> </ul> <p><a href="https://www.gov.si/en/topics/coronavirus-disease-covid-19/bord">https://www.gov.si/en/topics/coronavirus-disease-covid-19/bord</a></p> |

|                       |           |  |
|-----------------------|-----------|--|
|                       |           | <p><u>er-crossing</u></p> <p>[Swis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ing the border for EU+ countries</li> <li>- List of countries subject to quarantine : from Spain, Croatia, France(some region), Belgium, Austria(some region), etc.</li> <li>- Government website : <a href="https://www.bag.admin.ch/bag/en/home/krankheiten/ausbrueche-epidemien-pandemien/aktuelle-ausbruecheepidemien/novel-cov/empfehlungen-fuer-reisende/quarantaene-einreisende.html#1918240392%E2%80%8B%E2%80%8B%E2%80%8Betc">https://www.bag.admin.ch/bag/en/home/krankheiten/ausbrueche-epidemien-pandemien/aktuelle-ausbruecheepidemien/novel-cov/empfehlungen-fuer-reisende/quarantaene-einreisende.html#1918240392%E2%80%8B%E2%80%8B%E2%80%8Betc</a></li> </ul> <p>[Tunis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st of countries subject to PCR report, quarantine : All countries</li> <li>- Restriction on movement</li> </ul> <p>[Austr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bmission the report of infection: France(some region), Coratia, Spain, etc</li> <li>- Permission to enter from Korea without self-quarantine</li> <li>- Restrictions on movement, Close of all shops</li> <li>- Government website : <a href="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ormen&amp;Gesetzesnummer=20011303">https://www.ris.bka.gv.at/GeltendeFassung.wxe?Abfrage=Bundesormen&amp;Gesetzesnummer=20011303</a></li> </ul> |
| France                | Pari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o boarder closed. No restriction of movement was imposed. However, wearing of Mask is compulsory inside building and congestion outside areas such as in the park, rivers and resorts. Please refer to below for the recent situation in France</li> </ul>   |
| Netherlands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avel to risky countries (the most European countries) or contact with corona virus patient – should go into 10 days quarantine</li> <li>- information: <a href="https://www.netherlandsworldwide.nl/latest/news/2020/06/15/going-on-holiday-abroad-countries-whose-borders-are-open">https://www.netherlandsworldwide.nl/latest/news/2020/06/15/going-on-holiday-abroad-countries-whose-borders-are-open</a></li> <li>- 'Partial lockdown' till mid December</li> </ul>   |
| Luxemburg,<br>Belgium | Rotterda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uxembur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therlands travellers should go into 10 days quarantine after return from Luxembourg</li> </ul> </li> <li>- Belgi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etherlands travellers should go into 10 days quarantine after return from Belgium</li> <li>. Need document to enter Belgium &amp; COVID 19 test in Belgium if traveller stay more than 48hours</li> </ul> </li> </ul>   |

\* 한국어 기준으로 기재하되, 원문에서 영문내용만 기재된 경우 영문만 기재

국제우편 EMS 접수 가능 국가 안내 ( 5/17 기준 )

| 국가명      | 항공통상 | 선편통상                     | K-Packet | 항공소포 | 선편소포 | EMS | 비고  |
|----------|------|--------------------------|----------|------|------|-----|---|
| 남아프리카공화국 | ×    | ○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   |   |
| 대만       | ×    | ○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   | 계약고객<br>등기소형포장<br>물 외<br>접수불가               |
| 멕시코      | ×    | ×                        | ×        | ×    | ×    | ○   |   |
| 러시아      | △    | ×                        | ○        | ×    | ×    | ○   | 계약고객<br>등기소형포장<br>물 외<br>접수불가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   |   |
| 말레이시아    | ○    | ○                        | ○        | ○    | ○    | ○   |   |
| 몽골       | ×    | ×                        | ×        | ×    | ×    | ○   |   |
| 미국       | △    | ×                        | ○        | ×    | ×    | ○   | 접수지역<br>제한<br>계약고객<br>등기소형포장<br>물 외<br>접수불가 |
| 바티칸      | ○    | ×                        | ×        | ○    | ×    | ×   |   |
| 방글라데시    | ×    | ○                        | ×        | ×    | ○    | ×   |   |
| 베트남      | ○    | ○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   |   |
| 부탄       | ○    | ×                        | ×        | ○    | ×    | ○   |   |
| 브라질      | ×    | ×                        | ×        | ×    | ○    | ○   |   |
| 사우디아라비아  | ×    | ×                        | ×        | ×    | ×    | ○   |   |
| 산마리노     | ○    | ×                        | ×        | ○    | ×    | ×   |   |
| 스리랑카     | ×    | ×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   |   |
| 싱가포르     | ×    | △<br>등기통상 불가,<br>일반통상 가능 | ×        | ×    | ○    | ○   |   |

| 국가명            | 항공통상 | 선편통상 | K-Packet | 항공소포 | 선편소포 | EMS | 비고                            |
|----------------|------|------|----------|------|------|-----|-------------------------------|
| 아랍에미레이트<br>연합국 | ×    | ×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   | 계약고객<br>등기소형포장<br>물 외<br>접수불가 |
| 오스트리아          | ×    | ×    | ×        | ×    | ×    | ○   |                               |
| 우크라이나          | ×    | ×    |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   |                               |
| 인도             | ×    | ○    | ×        |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   | 선편지연                          |
| 중국             | ○    | ○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   |                               |
| 카자흐스탄          | ×    | ×    | ×        | ×    | ×    | ○   |                               |
| 카타르            | ×    | ×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   | 계약고객<br>등기소형포장<br>물 외<br>접수불가 |
| 탄자니아           | ×    | ×    | ×        | ×    | ×    | ○   |                               |
| 터키             | ×    | ×    | ×        | ×    | ×    | ○   |                               |
| 태국             | ○    | ○    | ○        | ○    | ○    | ○   |                               |
| 페루             | ×    | ○    |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   |                               |
| 필리핀            | ○    | ○    | ○        | ○    | ○    | ○   | 접수지역<br>제한                    |
| 헝가리            | ×    | ×    | ×        | ×    | ×    | ○   |                               |
| 호주             | ×    | ×    | ×        | ×    | ×    | ×   | 배송지연                          |
| 홍콩             | ○    | ○    | ○        | ○    | ○    | ○   |                               |
| 소계             | 11국  | 21국  | 11국      | 12국  | 25국  | 44국 |                               |

※ 소형포장물 선편의 경우 17.07.01.자 서비스 중지

※ 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캐나다의 항공통상은 계약고객 등기소형포장물 외 접수불가

※ 독일행 국제우편물 기표지가 한글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 반송됨에 주의

## 국제우편 EMS 접수제한 국가 안내 ( 5/17 기준 )

|     |   |                 |               |                |              |
|-----|---|-----------------|---------------|----------------|--------------|
| 미국  | EMS / K-Packet : 하와이 지역 접수중지 – 21.04.09.부터 선편우편물 접수중지<br>뉴욕교환국 해당지역 한달 이상 배송지연 (우편번호 001XX ~ 399XX)   |                 |               |                |              |
|     | Alabama   | Connecticut     | Delaware      | Florida        | Georgia      |
|     | Maine   | Maryland        | Massachusetts | Mississippi    | Atlanta      |
|     | New Hampshire   | New Jersey      | New York      | North Carolina | Pennsylvania |
|     | Rhode Island  | South Carolina  | Tennessee     | Vermont        | Virginia     |
|     | West Virginia   | Washington D.C. |               |                |              |
| 필리핀 | 마닐라섬 루손섬 외 나머지 지역 운송불가<br>(접수가능우편번호 : 마닐라섬(1로시작) 루손섬(25~, 29~, 33~, 36~, 38~, 40~, 48~, 49~, 51~, 52~로시작)<br>* 루손섬 내에서도 운송 불가한 지역 존재하니 가급적 우편번호 기준 접수 안내<br>– 선편우편물 지역제한 없음 |                 |               |                |              |
|     |   |                 |               |                |              |

## 코로나19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주요국 조치 현황

(자료 : 외교부, 5/25(화) 17:00 기준) ※국가순서별

-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국 리스트는 동 게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1  | 가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1.부터 코로나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20.8.30.)(단,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거부, △자국민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하여 가나로 입국하는 경우 첫 출국 국기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발급 필요</li> </ul> </li> <li>※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차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양성인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격리시설에서 의무 격리 7일 및 치료(최종 퇴원은 보건당국 검역지침에 따름)</li> <li>- 출발 전 온라인(<a href="http://myfrontierhealthcare.com/Home/Ghana">http://myfrontierhealthcare.com/Home/Ghana</a>)으로 검사비용 사전 지불 및 탑승 전 검사비용 결제 영수증 항공사에 반드시 제출</li> </ul> </li> </ul>   |
| 2  | 가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능한 경우,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단, 항공기 탑승 3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소지(에티오피아 항공은 탑승 48시간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함))</li> <li>※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li> <li>※ 20.3.20.부터 육로·해로·항공 국경 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1.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재개방</li> </ul> </li> </ul> </li> </ul>   |
| 3  | 가이아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3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시 음성확인서가 3일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의무 샘플 검사(20.11.1.)</li> </ul> </li> </ul>   |
| 4  | 감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시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시(2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인 22개국(한국 포함)에서 출발한 승객 대상으로 반출 국제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귀가, 양성일 경우 PCR검사 실시</li> </ul> </li> <li>※ 상기 국가 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도착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시 후 귀기(14일 자가격리 및 증상 관찰 권고)</li> </ul> </li> </ul>   |
| 5  | 과테말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2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항공 입국)</b>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항공사의 확인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항원 검사의 음성확인서(반드시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 제출, △연령에 상관없이 사전신고사이트(<a href="https://sre.gt">https://sre.gt</a>)에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Pass) 온라인 작성 후 확인, △체온 검사,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부터 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차부담)</li> </ul> </li> <li>※ <b>(육로 입국)</b>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육로 입국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항원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단, 정기적으로 육로를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객과 화물차 기사의 경우 예외), 국경에 위치된 건강상태 문진표 수기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테말라 도착 이전 14일간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남아공에 체류한 외국인 대상 입국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적으로 입국 희망 시 보건당국 신고 후 최소 10일간 거주지 또는 본인 거주지 또는 별도 장소에서 격리 의무</li> </ul> </li> </ul> </li> </ul> </li> </ul> |
| 6  | 그레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전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0.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그레나다 정부 홈페이지(<a href="http://covid19.gov.gd">http://covid19.gov.gd</a>)상에서 건강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li> <li>※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4일간 격리</li> </ul> </li> </ul>   |
| 7  | 그리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입국 24시간 전까지 <a href="http://travel.gov.gr">travel.gov.gr</a>에서 승객위치확인서 작성하고, <b>입국 시 백신접종</b></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b>증명서(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검사), 코로나19 회복증명서(확진판정 이후 2개월부터 최대 9개월 유효) 중 1개 서류 지참 필수</b></p> <p>* 비EU 국가의 경우 특별입국허가 신청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b>한국</b> 포함 21개국(호주, 뉴질랜드, 태국, 미국, 영국, UAE, 이스라엘, 러시아, 르완다, 싱가포르,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캐나다, 벨라루스, 바레인, 카타르, 중국, 쿠웨이트,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국민 및 영주권자는 특별입국허가 신청 없이 입국 가능</li> </ul> <p>*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양성 판정 시 격리시설로 이동 후 14일 격리</p> <p>* 21.5.14부터 도서지역 포함 지역간 이동을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리스 국내 항공편 탑승시 또는 도서지역 방문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 △코로나19 음성확인서(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또는 코로나19 신속검사결과(24시간 이내 검사), △자가진단 음성확인서(24시간 이내 검사, 개인작성) 중 1개 서류 지참 필수</li> </ul> |
| 8  | <b>기니</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검사 방식) 제출 의무</li> </ul> <p>*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p> <p>* 출국 시 출국 3일 전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NSP)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신고서 제출</p>   |
| 9  | <b>기니비사우</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시 출발 72시간 전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li> </ul> <p>* 건강상태, 출발지 및 도착지 연락처 등 제출 필요</p> <p>* 밀접 등 유증상자 대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및 결과 통보 및 보건당국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주지에서 격리</p> <p>* 의심환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14일간 보건당국이 별도 관리</p>   |
| 10 | <b>나미비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1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li> </ul> <p>* 외국인은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p> <p>* <b>(단기 방문객)</b> 나미비아 내 목적지까지 자유로운 이동 가능(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실시(차부담) 후 음성인 경우 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 후 3일 이내 재입국하는 여행객은 출국 시 제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서로 재입국 가능</li> <li>- 출국 후 3일을 초과하여 재입국하는 경우, 신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또는 신속 항원검사 결과 제출 필요(미제출 시 격리조치)</li> </ul> <p>* <b>(장기 체류자)</b> 거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하나 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치료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미비아 영주권자는 출발국 정부의 유효한 격리면제서 제시할 경우, 검사결과에 상관없이 격리대상에서 제외</li> </ul>        |
| 11 | <b>나우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여행객은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파푸아뉴기니 제외 13개국)에서 체류 후 승인을 받아 나우루 입국 가능(20.8.7.)</li> </ul> <p>* △탑승 전 보건설문지 작성 및 체온 등 확인,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 시 기타 검사 실시</p> <p>* 모든 입국자는 치료 주거시설에서 14일 격리,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p>   |
| 12 | <b>나이지리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a href="http://nict.ncdc.gov.ng">http://nict.ncdc.gov.ng</a>)에 결과 입력 필요 △상기 사이트상에서 현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 진행 및 자가진단서 작성</li> <li>• (입국 시) 출발 전 PCR 검사 결과서 및 재검 예약증 제출</li> <li>•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정) 실시 후 예약한 장소에서 PCR 재검 실시하고, 음성 판정 시 도착 후 8일째부터 격리 해제</li> <li>• 21.5.4부터 4주간 브라질, 인도, 터키에서 출발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li> </ul> <p>* 상기 국가에서 입국하는 나이지리아 국민은 도착일로부터 7일 시설격리</p> <p>* 상기 3개국을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입국 허용</p>   |
| 13 | <b>남수단</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 시점 기준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li> </ul> <p>*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의무(14일 자가격리 후 이를남 자정 이후 차동 해제)</p> <p>*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을 통해 E-Visa(<a href="http://evisa.gov.ss">evisa.gov.ss</a>) 신청 후 소지 의무</p> <p>* 상세 소지 필요 서류 주무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p>   |
| 14 | <b>남아프리카공화국</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0.10.1.)</li> </ul> <p>* 유증상자 및 접촉자의 경우 10일간 치료시설 격리(차부담)</p> <p>*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남아공 Covid Alert 앱 설치, △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기축 전체 검사 및 격리(차부담)</p>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15 | 네파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6.부터 관광 입국비자 발급 재개(20.12.11.)</li> <li>* △주한네�팔대사관 등을 통해 관광 입국비자 발급 가능, 스도착비자는 ①관용외교관 여권 소지자, ②NRN(Non Residential Nepali/ 외국귀화 네팔인), ③네파ل 관광청의 추천 서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li> <li>* 모든 네파입국 외국인들은 네파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침(5세 미만의 어린이는 제외)해야 외부활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의무</li> </ul> </li> <li>* 육로 국경을 통한 입출국은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네파 정부의 사전 승인/추천서를 소지한 경우 제외)</li> </ul>   |
| 16 | 노르웨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EEA 국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국적 불문, 외국인 입국 금지(2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장기 거주증이거나 장기체류비자(유학 등) 보유자, 기타 노르웨이 정부가 특별히 허가한 외국인만 입국 가능</li> </ul> </li> <li>▶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하더라도, 아래 4가지 입국 관련 의무 준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li> <li>② 출발지 출발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영문기재 필수)</li> <li>③ 입국 시 입경지점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세 이하 아동 입국시에도 코로나19 검사 필수(21.4.19.). 단, 아동 본인이 거부하는 등 검사가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검사 의무 면제</li> </ul> </li> <li>④ 입국 후 10일 시설격리 의무(2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 핀란드 일부지역, 그린란드 발 입국자</li> <li>- 대부분은 공항 인근 호텔로 지정</li> <li>- 격리 7일 이후 코로나19 검사로 음성확인이 될 경우 격리 해제 가능</li> </ul> </li> </ul> </li> </ul> |
| 17 | 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li> <li>*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20.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하기(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시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li> </ul> </li> <li>* 20.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li> <li>* 21.1.18.부터 모든 해외입국자(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 대해 뉴질랜드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25.부터 모든 지역(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서 출발하는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li> </ul> </li> <li>▶ (예외적 입국자) Travel Bubble 관련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쿡제도, 나우에,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無격리 입국 가능(상세내용 주뉴질랜드대사관 홈페이지 참고)</li> </ul> </li> </ul>  |
| 18 | 나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li> <li>*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li> <li>* 나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li> </ul>  |
| 19 | 니제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을 통한 입국 재개(2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유증상 시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li> <li>* 14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7일간 자가격리 실시(20.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 △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 △격리 7일 째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격리 종료</li> <li>- 단,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li> </ul> </li> </ul> </li> </ul>   |
| 20 | 니카라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20.9.19.부터 일부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행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사전 제출 및 입국 시 제출 필요(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출발 입국자는 96시간 내 시행된 확인서 제출)</li> <li>*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불가</li> </ul> </li> <li>▶ (육로) 남부 및 북부 육로 국경을 통한 출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육로 국경 통과 시 제출 필요</li> </ul> </li> </ul> </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21 | 대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9. 00:00시부터 거주증 소지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대만 방문은 물론 대만에서의 단순 경유도 금지</li> <li>▶ 예외적 입국 시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후 방역호텔-집중격리시설-자가격리 실시</li> </ul> </li> </ul>   |
| 22 | 덴마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21.부터 '노랑' 단계 국가 및 지역* 거주민에 대한 국경통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핀란드, 아이슬란드, 몰타, 포루투갈,</li> </ul> </li> <li>(지역) 스페인의 Canarias, Ciudad de Ceuta, Comunitat Valenciana, Extremadura, Galicia, Illes Balears, Principado de Asturias, Region de Murcia, 프랑스의, Mayotte 및 노르웨이의 Rogaland, Moere and Romsdal, Norland, Innlandet, Vestland, Troendelag, Troms and Finnmark (5.15기준)</li> <li>* 덴마크 공항 입국심사 전 공항 내 위치한 코로나19 감염검사소에서 추가로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국심사 시 제출 의무(검사비 무료)</li> <li>* '노랑' 단계 국가에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 및 10일 격리 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황' 및 '빨강' 단계 국가 및 지역 거주민은 10일 격리 의무 적용하며, 입국을 위한 험담한 요건, 비행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li> </ul> </li> <li>* 환승목적으로 덴마크 공항을 이용 시 입국 가능,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단, 덴마크 공항 내 환승구역만 이용 가능)</li> </ul>   |
| 23 | 도미니카공화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li> <li>*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li> </ul>  |
| 24 | 독일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b>(입국규제)</b> 직전 6개월간 체류지 기준 EU/EFTA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원칙적 금지(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로부터는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긴급한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나 EU/솅겐 지역 내 장기 체류할 권리가 가진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li> <li>- 독일을 경유하여 EU/솅겐 내 국가로 가는 경우 최종목적지 국가에서의 입국 허가 필요</li> </ul> </li> <li>2. <b>(항공편 도착시 증명서 제출의무)</b> 한국발 포함 모든 항공편 도착 승객(만6세이상)은 항공편 탑승 이전에 항공사에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입국 수속시에도 제출 요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일을 단순 경유하는 경우에도 제출 필요</li> </ul> </li> <li>* <b>(음성확인서)</b> 항원검사(WHO기준인 민감도 80%이상, 특이도 97%이상 충족 필요)는 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차취된 검사, 핵산증폭검사(PCR, LAMP, TMA)는 독일 도착 최대 72시간 이전 검체 차취된 검사 결과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이바이러스지역으로부터 독일 입국 시에는 항원검사에 대해서는 48시간이 아닌 24시간이 적용</li> </ul> </li> <li>* <b>(완치확인서)</b> PCR 등 핵산증폭검사를 통해 확인된 최소 28일에서 최대 6개월 이전 코로나19 감염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완치확인서 소지 및 무증상이어야 완치자 해당</li> </ul> </li> <li>* <b>(백신접종증명서)</b> 독일 Paul-Ehrlich-Institut에서 명시한 백신(5.18 현재 Comirnaty, Janssen, Moderna, Vaxzevria)을 활용, (필요한 경우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최소 14일이 경과하여야 하며(완치자의 경우 백신 1도즈 접종 직후 충족), 독일어/영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로 작성된 종이 또는 디지털 형태의 증명서</li> <li>3. <b>(방역조치)</b> 독일 도착 직전 10일 이내 체류지 기준 위험지역/고발생지역/변이바이러스지역에 체류한 적 있는 내/외국인 모두 입국제한 조치(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자가격리) 대상(상세내용 아래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지역, 고발생지역, 변이바이러스지역은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RKI 발표 확인 필요(5.18 현재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li> <li>o <b>(위험지역)</b> △입국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입국 이후 48시간까지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10일간 자가격리(격리는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로 해제 가능하나 보건당국이 결정권한 보유)</li> </ul> </li> </o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험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상기 의무 제외</li> <li>◦ (고발생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음성확인서 또는 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10일간 자가격리(격리는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백신접종증명서로 입국 최소 5일 이후 해제 가능하나 보건당국이 결정권한 보유)</li> <li>- 고발생지역에서 중간체류 없이 단순 경유한 경우에는 상기 의무 제외</li> <li>◦ (변이바이러스지역)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탑승 전 및 입국 수속 시 반드시 음성확인서(완치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로는 불충분) 제출(독일 도착 최대 48시간 이전 검체 채취된 검사) △14일간 자가격리(증명서 등을 통한 조기 해제 불가능)</li> <li>※ 변이바이러스 지역에서 독일로의 승객 운송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독일 국적자 및 장기체류권자, 독일 내 공항 환승구역에서 단순경유 목적으로 운송, 기타 특수한 상황 등 일부 예외)</li> <li>- 변이바이러스지역을 단순 경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기 의무로부터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르비아, 13) 일본, 14) 세이셸, 15) 에티오피아, 16) 베트남, 17) 인도, 18) 카타르, 19) 핀란드, 20) 아제르바이잔, 21) 아르메니아, 22) 그리스, 23) 싱가포르, 24) 베네수엘라, 25) 독일, 26) 시리아, 27) 타지키스탄, 28) 우즈베키스탄, 29) 스리랑카</li> <li>* 블라디보스토크행 임시항공편의 경우 유효한 비자 소지자 외에도 출국 항공권을 소지한 무비자 입국자의 팀승이 가능하나, 추후 변경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팀승 가능 여부 확인 필요</li> <li>*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li> <li>* 유증상자로 판단되는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li> <li>*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운항이 재개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은 러시아 도착일 기준 3일 전과 러시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각각 PCR 검사(총 2회) 실시 필요(입국 후 진단검사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음성 확인 후 등교 수업 가능)</li> <li>- 노동·상용비자 소지자의 경우 초청장 발부 기관의 판단에 의해 14일 격리 여부 결정</li> </ul> </li> <li>▶ 20.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li> <li>*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li> </ul>   |
| 25 | 동티모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19.)</li> <li>* 특별한 경우 종리 허가 시 입국 가능하나, 자정시설에서 14일 격리(20.5.30.)</li> <li>▶ 20.4.4.부터 향후 안내 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li> <li>*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는 레바논 입국 시간 기준 96시간 내 출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편 팀승 시 제크인 키운터에 제출(미제출 시 팀승 불가), 12세 미만은 검사 의무 면제)</li> <li>* 출국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승객은 출발국에서 수행한 PCR 음성결과서 지참 불요하며 입국 직후 공항에서의 PCR 테스트만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다음 국가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PCR 음성 결과서 지참 면제 : 미국/캐나다/호주/레바논/뉴질랜드/유럽국가/아시아 국가/이집트/모로코/튀니지</li> </ul> </li> <li>*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covid.pcm.gov.lb에서 관련 서식을 전자제출한 후 동 결과를 SMS 또는 메일로 수령하여 팀승 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12세 미만 승객은 면제)</li> <li>*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covidlebtrack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입국 시 공항에서 레바논 보건부 대표에게 제시</li> <li>*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72시간 동안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면제 대상 : 외교관 및 가족/공무출장단/UNFIL 단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승객(최근 발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15일 이상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소지), △혈중 항체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나타난 IgG 검사 결과서를 지참한 승객(입국 후 공항 내 의료진의 격리면제 승인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동 확인서를 지참한 승객, 레바논 출국 후 1주일 이내 단기체류 후 복귀하는 승객</li> </ul> </li> <li>* 베이루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입국 즉시 PCR 검사 실시(검사비용은 각 항공사가 항공 요금에 포함하여 징구하며 12세 미만 승객 및 UNFIL 또는 외교단 소속 승객, 48시간 이내 기간 동안에만 세류하는 승무원은 검사 면제)</li> <li>* 21.5.3. 이후 브라질 및 인도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레바논 입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2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레바논 입국 이전 2주간 제3국에서 체류한 후 입국 가능</li> </ul> </li> </ul> |
| 26 | 라오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6.4.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li> <li>*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라오스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 (RT-PCR만 인정) 지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65만kip = US\$70 상당 비용 자부담)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외교관의 경우 지택이 아닌 정부 지정 시설 또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li> <li>- 14일간 추적장치 소지(임대료 US\$6/1일) 및 코로나19 보험 기입(US\$100) 의무</li> </ul> </li> <li>* 라오스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 허가를 받은 단체 관광객 입국 가능</li> <li>* 코로나19 발생국 국민에 대한 모든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 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li> <li>*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 가능(상세내용 주라오스대한 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li> </ul> | 30 | 레바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는 레바논 입국 시간 기준 96시간 내 출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실시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편 팀승 시 제크인 키운터에 제출(미제출 시 팀승 불가), 12세 미만은 검사 의무 면제)</li> <li>* 출국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전 2차 백신접종을 마친* 승객은 출발국에서 수행한 PCR 음성결과서 지참 불요하며 입국 직후 공항에서의 PCR 테스트만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다음 국가에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만 PCR 음성 결과서 지참 면제 : 미국/캐나다/호주/레바논/뉴질랜드/유럽국가/아시아 국가/이집트/모로코/튀니지</li> </ul> </li> <li>*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covid.pcm.gov.lb에서 관련 서식을 전자제출한 후 동 결과를 SMS 또는 메일로 수령하여 팀승 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12세 미만 승객은 면제)</li> <li>*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covidlebtrack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입국 시 공항에서 레바논 보건부 대표에게 제시</li> <li>*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72시간 동안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면제 대상 : 외교관 및 가족/공무출장단/UNFIL 단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승객(최근 발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15일 이상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소지), △혈중 항체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나타난 IgG 검사 결과서를 지참한 승객(입국 후 공항 내 의료진의 격리면제 승인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동 확인서를 지참한 승객, 레바논 출국 후 1주일 이내 단기체류 후 복귀하는 승객</li> </ul> </li> <li>* 베이루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입국 즉시 PCR 검사 실시(검사비용은 각 항공사가 항공 요금에 포함하여 징구하며 12세 미만 승객 및 UNFIL 또는 외교단 소속 승객, 48시간 이내 기간 동안에만 세류하는 승무원은 검사 면제)</li> <li>* 21.5.3. 이후 브라질 및 인도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레바논 입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2개 국가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레바논 입국 이전 2주간 제3국에서 체류한 후 입국 가능</li> </ul> </li> </ul> |
| 27 | 라이베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입국자는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li> <li>* 사전에 Lib Travel 앱을 다운받아 건강상태확인서 입력 및 검사비용(\$75)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앱 다운 : <a href="http://moh.gov.lr/press-release/2020/covid-19-testing-protocol-for-travelers/">http://moh.gov.lr/press-release/2020/covid-19-testing-protocol-for-travelers/</a></li> <li>- 앱 사용 불가시 도착 후 건강상태확인서 작성 및 검사비용 지불 가능</li> </ul> </li> <li>* 도착 다음날부터 7일 자가격리 및 14일간 상기 앱을 통한 셀프 모니터링 권고</li> <li>*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 도착 후 검사 면제 대상자는 출발 96시간 전 검사 및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검사 실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외국가에서 루셈부르크행 여행자 2021.6.30.까지 입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금지 적용 예외 대상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발 여행자, △환승객, 외교관, 보건분야 종사자</li> </ul> </li> <li>* 국적 무관, EU+ 역외/역내국가 무관, 항공편으로 루셈부르크에 입국하는 6세 이상 모든 여행자는 팀승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외국가에서 항공편으로 루셈부르크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되던 공항 도착 시 신속 항원 검사 수검 불요</li> </ul> </li> <li>* 최근 14일 내 인도에 체류한 적이 있는 승객의 경우(기간 무관), 루셈부르크 입국 즉시 인도 체류 사실을 알리고, PCR 검사 진행 및 7일간 자가격리 필요(격리 6일째 두 번째 검사 수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입국시 공항에서 무료 검사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시와 격리 6일째 PCR 검사 진행 거부시 의무 격리 기간 7일 추가 가능(총 14일)</li> </ul> </li> </ul> </li> </ul>  |
| 28 | 라트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전 covidpass.lv에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QR코드 부여)하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li> <li>* EU국가(바티칸 제외)발 입국자 및 비EU국가(한국 포함 8개국 제외)발 입국자에 대해 10일 자가격리 조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한국 출발자의 경우 경유지에 따라 자가격리(거주예정지 또는 호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spkc.lv에서 사전확인 요망</li> </ul> </li> <li>* 21.5.15부터 라트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EU, EEA, 스위스, 영국 내에 머물렀으며, 백신 접종을 등 지역에서 원료하고 15일이 경과한 입국자 대상 격리 면제(여타 국가(한국 포함)에서 백신 접종 완료 후 라트비아 입국 시 10일간 자가격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종류 : EMA, WHO 및 이와 유사한 기관(equivalent regulator)이 승인한 백신</li> </ul> </li> </ul>         | 31 | 룩셈부르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외국가에서 루셈부르크행 여행자 2021.6.30.까지 입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금지 적용 예외 대상자)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발 여행자, △환승객, 외교관, 보건분야 종사자</li> </ul> </li> <li>* 국적 무관, EU+ 역외/역내국가 무관, 항공편으로 루셈부르크에 입국하는 6세 이상 모든 여행자는 팀승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검사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역외국가에서 항공편으로 루셈부르크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되던 공항 도착 시 신속 항원 검사 수검 불요</li> </ul> </li> <li>* 최근 14일 내 인도에 체류한 적이 있는 승객의 경우(기간 무관), 루셈부르크 입국 즉시 인도 체류 사실을 알리고, PCR 검사 진행 및 7일간 자가격리 필요(격리 6일째 두 번째 검사 수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입국시 공항에서 무료 검사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시와 격리 6일째 PCR 검사 진행 거부시 의무 격리 기간 7일 추가 가능(총 14일)</li> </ul> </li> </ul> </li> </ul>  |
| 29 | 러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21.4.16.부터 우리 국민의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를 통한 러시아 입국 허용, 육로입국은 불허용)</li> <li>* 러시아 항공운항 재개 국가: 1) 영국(6월 1일까지 정부 허가받은 운행을 제외한 항공 운항 중단 연장), 2) 탄자니아(4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자국민 송환용 노선을 제외한 정기/비정기 항공노선 운항 중단), 3) 터키(4월 15일부터 6월 1일까지 주 2회 정기 항공노선 및 자국민 송환용을 제외한 노선 운항 중단), 4) 스위스, 5) 이집트, 6) 몰디브, 7) 아랍에미리트, 8) 카자흐스탄, 9) 키르기스스탄, 10) 대한민국, 11) 쿠바, 12) 세</li> </ul>   | 32 | 르완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20.7.29.)</li> <li>* 21.2.8부터 공항을 통한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만 5세 미만 제외) △항공기 팀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a href="http://www.rbc.gov.rw">www.rbc.gov.rw</a> 통해 승객위치확인서(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지정호텔 예약정보 등)</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 △입국 후 검역 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진행(검사비 USD 60), △결과 나올 때까지 지정호텔에 24시간 대기 후 음성판정 시 활동 가능<br>※ 키갈리 국제공항 경유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a href="http://www.rbc.gov.rw">www.rbc.gov.rw</a>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기입, △경유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주가 코로나19 검사 미실시<br>※ 21.5.6부터 인도발 입국자는 지정호텔에서 7일 격리 의무(비용 자부담)   |
| 33 | 리비아     | ▶ 입국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
| 34 | 리투아니아   | ▶ 모든 입국자(한국발 포함)는 입국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br>*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만 인정<br>※ 음성확인서 소지 예외 : 16세 미만 연령자(입국 후 자가격리 실시), 입국일 기준 최초 양성 판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코로나19 완치자, EU지역에서 허용된 백신 접종 완료자(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회차 완료, 안센은 1회 접종자)<br>※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자가격리 의무(7일 후 자부담으로 검사, 음성 판정시 격리 해제)<br>- 자가격리 예외: 입국일 기준 최초 양성 판정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지 않은 코로나19 완치자, EU지역에서 허용된 백신 접종 완료자(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2회차 완료, 안센은 1회 접종자)<br>※ 모든 입국수단(항공, 차량 등) 탑승 전 홈페이지( <a href="http://keleiviams.nvsc.lt/en/form">keleiviams.nvsc.lt/en/form</a> )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   |
| 35 | 마다가스카르  | ▶ 20.3.20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br>※ 단, 외교관, 외국 파견 전문가, 국가대표 선수, 선교사에 한해 예외적 입국 허용  |
| 36 | 마셜제도    | ▶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6.5.)   |
| 37 | 마이크로네시아 | ▶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20.5.4.)  |
| 38 | 마카오     | ▶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5.)<br>※ 외국국적자 중 마카오 내 중국영사부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중국비자를 소지하고 중국 방문 후 마카오로 돌아오는 경우 입국 허용<br>※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신청 가능(단, 입국허용 여부 및 방역조치(격리 등)는 마카오 정부가 결정)<br>- 최근 21일 이상 중국에 머문 경우, 스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스마카오 거주 자격을 습득한 자, 스마카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해야하는 자, △취업 등 마카오 비거주 체류자격을 습득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br>- 최근 21일 이상 홍콩, 대만, 여타 국가에 머문 경우, 스마카오 공공이의 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자, 스마카오 내 일일필수품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br>※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14일 이상 중국 체류 후 입국시 7일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격리없이 입국, 단 최근 14일내 중국내 코로나19 발생지역을 방문한 경우 14일 격리, △최근 21일 이상 대만 체류 후 입국시 72시간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21일 격리, △최근 14일 이상 홍콩 체류 후 입국시 24시간내(홍콩)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14일 격리 및 7일 능동감시, △최근 21일 이상 여타 국가 체류 후 입국시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필수 소지, 21일 격리 및 7일 능동감시<br>- 단,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21일내 여타 국가를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21.1.13)   |
| 39 | 말라위     | ▶ 20.9.1.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20.8.27.)<br>※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가능하면 72시간 이내 권장) 발급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 필요(미지참 시 입국 거부),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br>※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br>▶ 21.4.26.부터 인도, 뱅글라데시, 페키스탄, 브라질 출발 여행자 입국 금지<br>※ 상기 국가에서 출발했더라도 필수 목적(외교관, 필수 의료목적 등) 입국자는 예외적 입국 허용<br>※ 상기 예외적 입국자는 △정부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자부담),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검사지 지참 필수  |
| 40 | 말레이시아   | ▶ 20.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br>※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br>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br>- 20.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  |
|    |         | MM2H 비자 소지자, △외교관<br>- 취업비자-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출국 후 재입국) 가능<br>- 학생 비자 소지자 및 그들의 보호자(해당 학교측에서 교육부를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사전 승인(Travel Authorisation Approval Letter) 레터를 받음)<br>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의 발급일로부터 60/90일 이내) 가능(공부사업 긴급한 사유 치료 목적)<br>※ 21.5.10.부터 변이바이러스 발생국(5.19기준 한국 포함 총 73개국)로부터 입국시<br>- 출발 전 3일 이내 코로나19 스왑 테스트 영문 음성결과지 제출<br>- 14일 시설격리(해당국 8시간 이상 환승 대기 시에도 14일 격리)(비용 자부담)<br>- 시설격리 10일 후 2차 코로나19 검사 실시<br>※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기준과 동일<br>- 20.12.14.부터 말레이시아 공항 도착 기준 72시간 내 코로나19 스왑 테스트 음성결과지를 공항 보건부에 제출 → 승인 시 코로나19 1차 검사 면제 및 10일 시설격리 기간 7일로 변경(격리 및 2차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부담)<br>※ 웹을 통한 검역비 사전 지불 및 개별적으로 지정 격리호텔 예약 가능(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br>※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은 비즈니스 진출 목적 입국 촉진을 위해 원스톱센터(OSC) 운영 중이며, 단기 방문자에 대하여 격리 면제(투자, 사업주, 기술전문가 등)<br>- <a href="http://safetravel.mida.gov.my">http://safetravel.mida.gov.my</a> 또는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 41 | 말리      | ▶ 20.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br>※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br>※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은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br>※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
| 42 | 멕시코     |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br>※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증증시 입원조치<br>▶ 21.4.21.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
| 43 | 모로코     | ▶ 20.10.1.부터 한국 포함 시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추가 완화(기존 입국 시 필수요건이었던 항체검사 폐지)<br>※ △우리 일반 방문객의 경우 ①모로코 내 호텔 예약 확인증, ②검체 채취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우리 기업인/기술자의 경우 ①모로코 기업의 초청장, ②검체 채취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구비<br>- 만 11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br>- 관련 상세사항은 주한모로코대사관에 확인 필요<br>※ 21.5.5.부터 이부두비(두바이)(UAE), 도하(카타르), 마나마(바레인)에서 입국시 기존 입국 요건인 검체 채취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와 함께, 공항 도착시 의료진단(medical control) 및 신속검사 의무 실시<br>- 양성일 경우 지정 병원 내 격리<br>※ 21.5.6. 현재 총 54개국*에 대해 경유지를 불문하고 해당국가에서 모로코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br>* 남아공,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호주, 알제리, 이집트,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스, 레바논,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카메룬, 크로아티아, 보잘리크, DR콩고, 기니, 리비아, 말리, 가나, 프랑스, 스페인, 튀니지, 알바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인도  |
| 44 | 모리셔스    | ▶ 21.5.31.까지 국경 폐쇄 및 입국 금지<br>※ 단, 정부로부터 입국허가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국 허용되며, 입국 시 아래의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서류 제시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행기 탑승 전 7일 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지정 호텔 내 14일 간 격리를 위한 호텔 숙박 증명서(추후 7일 간 자택 내 자가격리 / 총 21일간 자가격리)</li> </ul>  |
| 45 | 모리타니아 | <p>▶ 20.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입국 전 3일 이내(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외국인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구비 시 입국 불허), △체온 측정, △건강자가진단서 제출</li> <li>* 공항 도착 시 유증상(발열)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 결과 양성일 경우 보건당국 조치에 협조</li> </ul> </li> <li>*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0일간 의무 격리(비용 자부담), 10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li> <li>*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li> </ul> |
| 46 | 모잠비크  | <p>(4.27.부터 30일간 한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 외국인의 거주 및 여행 비자를 관련 절차에 따라 정상 발급(만료 비자는 5.31.까지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에 대한 체류기간 잡정 정지</li> </ul> </li> <li>▶ (검역) △출발 전 72시간 내 출발국에서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방식) 제출시 자가격리 면제(0-11세 아동의 경우 제출 면제),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검사 후 당국의 소견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격리(비용 자부담)</li> <li>- 모잠비크 단기여행자나 복수 출입국이 필요한 모잠비크 및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을 14일로 연장(샘플채취 기준)</li> <li>* 상기 정책 적용 지역 또는 예고 없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에 사전 확인 요망</li> </ul>                                   |
| 47 | 몬테네그로 | <p>▶ 20.4.24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 △IgG 항체검사 양성확인서(입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백신접종증명서(입국일 기준 최소 7일 전 2차 접종 완료) 중 1가지 이상 지참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서류 제출 예외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9개국(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알바니아, 코소보, 북마케도니아,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발 내외국민 입국자</li> <li>- △동 9개국 국적자, △동 9개국 체류허가 소지 외국인, △동 9개국에 15일 이상 무사증 단기체류 외국인</li> </ul> </li> </ul>  |
| 48 | 몰도바   | <p>▶ 21.3.5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 허용하되,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루마니아어, 영어, 불어, 노어만 인정)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음성확인서가 없는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li> <li>- 음성확인서 면제 : 5세 이하 아동, 코로나19 백신접종 확인서 소지자, 국제화물/여객차량 기사, 선박/항공/철도 승무원, 정부대표단, 국경지역근로자, 경유승객 등</li> <li>* 입국 시 발열 등 유증상자는 즉각 격리 및 진단결과에 따른 병원 이송 등 필요조치 실시(격리조치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출국 불가)</li> <li>- 외국인들은 몰도바에서 코로나 진단 및 치료시, 가입의료보험 또는 자비부담으로 진행</li> </ul>   |
| 49 | 몰디브   | <p>▶ 20.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사전에 이민국을 통해 온라인 등록 필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객은 △숙박 예정인 호텔 및 비행편 등을 몰디브 이민국에 등록 필요, △몰디브로 출발하기 최대 96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에서 발열체크, △유증상인 경우 PCR 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li> <li>* 몰디브 국적자 및 취업비자 소비자는 남아시아(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發 모든 승객 입국 금지(21.5.11.)</li> <li>* 관광객 포함, 남아시아 국가에 최근 14일간 체류하였거나 24시간 이상 경유한 승객</li> <li>* 취업비자를 받은 고용전문가는 예외적 입국 가능하나, △몰디브로 출발하기 최대 96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14일간 자가격리 필요</li> </ul>                                     |
| 50 | 몰타    | <p>▶ 각 국가 및 지역을 Green, Amber, Red 세단계로 분류하여 입국제한조치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een List 국가별 입국자 : 자가격리 불요(현재 해당 지역 없음)</li> <li>* Amber List 국가*별 입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72시간 전 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음성확인서 없을 경우 공항에서</li> </ul> </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의무, 방역조치 강화를 위해 몰타공항에 도착한 승객 중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랜덤으로 PCR 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민국,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폴란드, 이탈리아, 일본, 요르단, 라트비아,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롤센부르크, 모나코, 모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튜니지, 터키, UAE, 영국, 우루과이, 바티칸</li> </ul> <p>* Red List 국가*발 입국자 : 입국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Green, Amber list 제외한 모든 국가</li> </ul>   |
| 51 | 몽골    | <p>▶ 21.6월(구체 날짜 미상)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환승)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 △외교(D)·관용(A) 및 상용(B)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li> <li>* 아래 시설격리 면제자를 제외한 외교(D)·관용(A)·상용(B) 목적 단기체류 입국자 포함 입국자 전원 총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시설격리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시행 / 무증상 및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종료 / PCR 검사 양성일 경우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li> <li>- 외국인은 외국인 격리시설(지정 호텔)에 7일 시설격리</li> </ul> <p>* 백신 접종(2회)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하였거나 과거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완치 된 자는 시설격리 면제(21.4.6.)</p> <p>▶ 21.6월(구체 날짜 미상)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임시항공편 부정기 운항</li> </ul>   |
| 52 | 미국    | <p>▶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텁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텁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li> <li>-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li> </ul> </li> <li>*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텁승 시점을 기준으로 향(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li> </ul> </li> </ul> <p>*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7일 자가격리를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7일간 집에 머무를 것을 권고,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10일간 집에 머무르며 주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지침 준수 필요</li> <li>- 백신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조치 이행 불필요</li> </ul> <p>▶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이란,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몽골, 아일랜드, 브라질, 남아공, 인도(2021.5.4.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제한(음성확인서 지침 시에도 입국 불가)</p> <p>*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이며 미혼인 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윈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비자 소지자), △이민 비자 및 약혼자 비자 소지자, △교류 목적 방문자(보모, 인턴, 특수교사, 중대한 외교 정책 목적, 비행사 및 승무원(훈련 및 비행, 배달,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등)), △가을에 학업을 시작하려는 학생,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학생 및 특정 학자, △언론인 및 인프라 제공자 등</p> <p>▶ 21.6.21.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간 육로의 비필수 입출국 제한</p> <p>* (필수 입출국 간주 대상)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의료목적 여행자, △교육목적 여행자, △미국 내 근무자, △비상대응 및 공중보건 목적 여행자, △협법적 국경간 무역 종사자, △정부, 외교, 군 관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조치는 육로 국경 통과, 통근 열차, 통근 페리에 적용되며, 그외 항공, 철도, 해상 여행에는 비적용</li> </ul> <p>▶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p> <p>* (워싱턴 DC) 20.11.9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한국 포함)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p>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침 요구(위반 시 민형사처벌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일 평균 10만명당 1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외국의 경우 美CDC가 지정한 코로나19 여행건강경보 2-4단계 국가</li> <li>* 음성확인서 미지침 시 10일 자가격리 실시를 요구받을 수 있음</li> <li>* 3일 이상 머무를 경우 3-5일사이에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활동을 제한적으로 할 것을 요구</li> <li>※ 백신 접종 완료자 또는 코로나19 회복자의 경우 접종카드 등 확인서류 지침 시 진단 검사 및 자가격리 면제(21.3.3.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 또는 ②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했으며 증상이 없는 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접종 완료로 간주</li> </ul> </li> </ul> </li> <li>* (예외대상자) △필수 업무를 위한 DC 방문자 중 코로나19 재검사 후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는 자, △DC를 24시간 이하로 방문하는 자, △가족의 응급상황으로 인해 DC를 방문하는 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방문목적 이외의 활동 차제 요구</li> <li>▶ (뉴욕주) 21.4.12부터 여행자의 의무 자가격리 조치는 해제되었으며, CDC의 지침에 따라 모든 여행객은 여행 후 3~5일 사이 진단 검사를 받을 것과,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7일간 자가격리를 권고</li> <li>▶ (뉴저지주) 21.5.17.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격리 권고 조치 해제</li> <li>▶ (뉴햄프셔주)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 △(자가격리 도중) 도착 6~7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li> <li>※ 단, Pfizer, Moderna, Janssen 백신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시 자가격리 면제</li> <li>▶ (델라웨어주) 20.6.1.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자가격리 권고 중지</li> <li>▶ (로드아일랜드주)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 △(자가격리 도중) 도착 5일차 이후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li> <li>※ 단, △코로나19 감염 회복 이후 90일 이내 방문, 또는 △FDA나 WHO 승인 백신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시 자가격리 면제</li> <li>▶ (매사추세츠주)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간 자가격리 권고</li> <li>※ 단, 매사추세츠 도착 전 72시간 내 채취한 검체로 검사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또는 △Pfizer, Moderna, Janssen 백신 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시 자가격리 면제</li> <li>▶ (메릴랜드주) 21.3.12.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장(21.3.12.부터 자가격리 조치 해제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도 의무에서 권장으로 완화 조치)</li> <li>▶ (메인주) 해외에서 방문 시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하거나, △(자가격리 도중) 도착 3~5일차에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 가능</li> <li>※ 단, △Pfizer, Moderna, Janssen 백신접종 완료(제조사에 따라 1회 또는 2회 접종 후 14일 경과)시 자가격리 면제</li> <li>▶ (버몬트주) 미국 공통 검역강화 조치 외 별도 사항 없음</li> <li>▶ (알래스카주)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사항 : △알래스카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제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알래스카주 소재 검사소에서 검사), △입국 후 5-14일 사이에 코로나19 재검사</li> <li>*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 필요</li> </ul> </li> <li>▶ (캘리포니아주) 다른 주국가로부터 도착 시 10일 자가격리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비상대응 등 예외조건 충족 시 권고 적용 예외</li> </ul> </li> <li>▶ (코네티컷주) 21.3.19.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li> <li>▶ (펜실베니아주) 21.3.1.부터 주 차원의 여행자 의무 격리 조치 해제</li> <li>▶ (하와이주)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 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3.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에만 소재(지정 검사</li> </ul> </li> </ul> </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 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20.3.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팀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li> <li>*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li> </ul> </li> <li>▶ 20.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팀승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2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안마와 인접 국가*간 유통을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20.3.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li> </ul> </li> <li>*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격리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격리)로 확대(20.4.11.)</li> </ul> </li> <li>▶ 긴급한公务 또는 탄당한 사유로 미안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20.6.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안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li> <li>-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li> <li>- 주한미안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안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li> <li>-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을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li> </ul> </li> </ul> |    |       | <p>당국에서 보관하며,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원치 이후 여권 회수 가능), △입국 14일 이후 2차 검사, △출국 72시간 전 3차 검사<br/>           * 환승·경유 승객 코로나19 검사 면제</p>   |
|    |       |   | 61 | 베네수엘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베네수엘라 항공편 팀승 24시간 전 항공사 측에 PCR 음성확인서 송부 또는 등록 필요(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ser, Turpial, Avior 항공사) 음성확인서 이메일로 송부</li> <li>- (Conviasa, Estelar 항공사) 음성확인서 홈페이지에 등록</li> <li>- (Venezolana de Aviacion, Rutaca 항공사)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li> </ul> </li> <li>* △사전에 홈페이지(pasedesalud.casalab.com.ve)에서 QR코드 발급,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후 택시에서 검사결과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R 검사 비용 \$60(베네수엘라 항공사는 항공권 가격에 포함, 외국 항공사는 체크인 시 별도 지불)</li> </ul> </li> </ul> </li> </ul>   |
| 54 | 민주콩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li> </ul> </li> </ul>   | 62 | 베트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 또는公务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국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0.8.3.)</li> </ul> </li> <li>*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21일간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격리 기간 중 3회 코로나19 검사(격리 1일, 14일, 20일째)</li> <li>- 시설격리 종료 후 7일 자가격리(자가 및 체류지내 건강상태 모니터링) 실시하며, 자가격리 7일째 코로나19 검사</li> </ul> </li> </ul> </li> </ul>   |
| 55 | 바누아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li> <li>* 거주비자(resident visa) 소지 외국인은 예외적 입국 허가가 있을시 입국 가능하며, 지정시설에서 2주 격리</li> <li>*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0.7.14.)</li> </ul>  | 63 | 벨기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19.부터 벨기에/벨기에에 비필수적 여행 금지 해제(→강력 자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색 지역에서 입국 시 : 7일 자가격리 필요, 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검 의무(미준수 시 250유로 벌금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28일 기준) 브리질, 남아공, 인도, 벨기에 입국 · 경유 금지(단, 벨기에 국적자 · 거주자, 필수목적 여행인 경우 예외)</li> <li>- 단, 영국, 남아공, 남미, 인도에서 입국 시 : 10일 자가격리 필요, 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검 의무</li> </ul> </li> <li>* EU에 의해 안전국가로 분류된 국가*에서 입국 시 : 상기 사항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싱가포르, 태국(4.15. 현재)</li> </ul> </li> <li>* 적색 지역에서 입국하는 6세 이상 모든 승객은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영어불어네덜란드어독어로 발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안전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나 환승국가, 항공사 등에서 진단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감안, 가급적 음성확인서 소지 권고</li> <li>-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벨기에 체류 예정 기간이 48시간 이내인 사람이 자가 교통수단으로 입국할 때, △항공편을 통한 벨기에 경유(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운송 분야 종사자/선원/국경이동 노동자/국경이동 학생(의무교육과정을 위한 등교)/국경 공통임무권 행사를 위한 입국</li> </ul> </li> </ul> </li> </ul> |
| 56 | 바레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4.부터 도착 비자 발급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다음 해당자 외에는 입국제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레인 국민, 거주허가증 소지자, 한국 등 도착 비자 발급 대상국 승객, 유효한 eVisa 소지자, 외교관,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상세 사항 www.evisa.gov.bh)</li> </ul> </li> <li>* (공항 입국 시)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음성 결과 판별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및 입국 후 5일째, 10일째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3.부터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백신접종자 및 코로나 감염 후 회복한 경우는 코로나19 검사 면제(BaRien BeAware 모바일앱을 통한 증명 필요)</li> </ul> </li> <li>* (바레인-시우디아리비아간 연륙교 입국 시) 주재국에서 인정한 사우디 의료기관에서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li> <li>*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에서 출발하는 6세 이상 방문객에 대해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li> </ul> </li> </ul>   | 64 | 벨라루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벨라루스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또는 러시아어, 성명 기재 필수) 지참 의무(단, 민스크 공항 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24시간 이내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 경유 항공권 소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포함 28개국에서 출발 시 자가격리 미실시(관련 상세 내용은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존 (28개국) : 대한민국, 중국, 호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알제리, 베트남, 모리셔스, 뉴질랜드, 태국, 러시아, 탄자니아, 피지, 우즈베키стан,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공화국, 모로코,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포르투갈, 도미니카공화국, 알바니아, 핀란드, 영국, 몽골</li> <li>- 상기 28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격리기간 중 원격 모니터링 시행)</li> <li>- 그린존(한국 포함 28개국) 국가로부터 출발하였더라도 레드존(상기 28개 국가 이외 국가)을 경유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20.12.31.)</li> </ul> </li> <li>* 육로를 통한 벨라루스 입출국 한시적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1.부터 외국인의 벨라루스 육로 입국 제한, △20.12.21.부터 벨라루스 국민 및 외국인의 육로 출국 제한</li> </ul> </li> </ul> </li> </ul>   |
| 57 | 바베이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비행기 팀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바베이도스 정부 홈페이지(www.travelform.gov.bb)에서 입국카드(ED)를 작성하여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이메일(immigration.embarkation@barbados.gov.bb) 제출</li> </ul> </li> </ul>  | 65 | 벨리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일 기준 최소 2주 전 접종을 완료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Rapid Antigen, Sofia, SD Biosensor, Abbott(Panbio)”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 가능</li> </ul>   |
| 58 | 바하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승 전 5일 이내의 코로나 진단검사(PCR) 음성결과서 제출(비 접종자)하고 4부5일 이상 체류자는 5일 이내 코로나 신속 검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자는 PCR음성확인서 제출 면제</li> </ul> </li> <li>* 모든 18세 이상 여행자는 헬스비자 신청의무</li> </ul>  |    |       |  |
| 59 | 방글라데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 취득 필요)</li> <li>▶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10세 이하 영·유아 제외한 모든 승객은 반드시 출발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문 원본)를 제출</li> <li>▶ 21.5.1.부터 한국발 방글라데시 입국 승객은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제3국 입국 없이 공항 환승구역에서 머무는 것을 조건으로 방글라데시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시행</li> <li>* 다만,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정부 지정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증상 발견 시 시설격리 조치</li> </ul> </li> </ul>   |    |       |  |
| 60 | 베냉    | ▶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코로나19 PCR 검사, △ 입국 즉시 1차 검사(입국시 여권은 베냉   |    |       |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일 기준 72시간 안에 벨리즈 보건 앱을 다운로드하여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항공사에 입국신청서를 제출</li> <li>* 여행객은 반드시 정부에서 허가한 Gold standard hotel 표시 숙박시설 예약 필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 및 그 가족,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일본, 뉴질랜드, 중국, 르완다, 대한민국, 태국, 튜니지, 우루과이, UAE, 조지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러시아, 이스라엘, 쿠웨이트, 벨라루스, 터키 국적자, △불가리아, EU회원국, 웅겐협약국 장기 거주자 및 그 가족은 입국시 ③도착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또는 도착전 48시간 이내 시행된 신속항원 음성결과지 제출 또한 가능</li> <li>*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입국시 상기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시행 필요</li> <li>- 입국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결과지 또는 신속항원 음성결과지 제출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li> </ul>  |
| 66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 20.9.12부터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입국 허용  |    |         |  |
| 67 | 보츠와나       | ▶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20.3.28)   |    |         |  |
| 68 | 볼리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4.1부터 아래 입국절차 적용</li> <li>* 5세 이상 모든 내외국인 대상 아래 입국요건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 입국 시, 항공편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li> <li>- 유통, 선박 입국 시, 볼리비아 도착 전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li> </ul> </li> <li>② 입국 후 최소 10일 자가격리(입국 후 7일째 PCR 검사 시행(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 10일 격리하는 자가격리를 의미하나, 입국 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주재국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 격리(주재국 시설 이용료 등 자부담)</li> </ul> </li> <li>③ 볼리비아 내 체류지(거주지) 확인서 제출</li> <li>④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를 보장하는 여행자보험증서 제출(내국인 및 외국인 영주권자는 제외)</li> </ul> </li> <li>* 입국요건 예외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은 ② 조건부 면제(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여행자보험증서, 체류지 확인서, 입국 후 7일째 PCR 검사결과는 제출 필요)</li> <li>- 승무원, 긴급한 의료목적 입국자, 항공화물기, 전세기 입국자, 국경 거주자 등은 PCR 음성확인서만 제출</li> <li>- 유럽발 여타국 경유 입국 승객은 14일 자가격리(상기 ①③④항은 동일 적용)</li> </ul> </li> <li>* 최근 14일 이내 영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승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볼리비아 국민,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입국</li> <li>- 볼리비아에 거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li> </ul> </li> <li>* 20.12.25-21.5.31.까지 유럽 발 항공기 운항 중단</li> </ul> | 73 | 브라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아일랜드(20.12.25.부터), 남아공(21.1.26.부터) 및 인도(21.5.14.부터)에 거주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브라질 이민자 및 국제기구 근무자, 브라질 정부의 승인을 받은 외국공무원, 물류운송증 소지자 등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li> </ul> </li> <li>* 20.12.30.부터 국적 불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RT-PCR)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T-PC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음성확인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제시 가능(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li> <li>-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li> </ul> </li> <li>▶ 유통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한 실시(일부 유통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경국가에 거주하고 본국 귀국을 위한 항공기 탑승 외국인은 연방경찰의 허가 받는 경우 입국 가능(△사전에 항공권 지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공식 요청, △입국 후 해당 공항으로 바로 이동)</li> <li>- 파리과이 접경 도시 일부(포즈 두 이과수, 폰타 포라, 문두 노부)에 대해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입국 허용</li> </ul> </li> <li>* 수, 해로 : 의료지원의 경우 항공을 통한 본국 귀국 환승의 경우 입국 허용</li> </ul> </li> </ul> </li> <li>▶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2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기혼여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 입국 승인(2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 신청</li> <li>-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격리기간은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의무 자가격리(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등은 10일차 및 12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li> </ul> </li> <li>* 유통 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경유 제한 연장(21.6.4.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공무 출장, 학생, 긴급상황(구급차, 경찰, 군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li> <li>- 브루나이 정부가 허가한 운송업자들이 필수품을 운반할 경우,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통행증 필요</li> </ul> </li> <li>▶ 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잠정중단(2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기간(보건부에서 위험성 평가 후 결정) 호텔에서 시설격리 필요</li> <li>* 브-싱 상호 그린레인: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협력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이 필요한 자는 시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이 가능한 제도</li> </ul> </li> <li>▶ 인도 및 인접국(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에 대한 입출국 제한조치(21.6.13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경유허가 잠정 중단, △해당 국가 항발 출국허가 잠정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외교여권 소지자 및 군인 제외</li> </ul> </li> </ul> </li> </ul> </li> </ul> |
| 70 | 부르키나파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을 통한 입국 재개(20.8.1.)</li> <li>*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침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li> <li>*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li> </ul>   | 74 | 브루나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20.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기혼여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 입국 승인(20.9.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 신청</li> <li>-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격리기간은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의무 자가격리(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등은 10일차 및 12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li> </ul> </li> <li>* 수, 해로 : 의료지원의 경우 항공을 통한 본국 귀국 환승의 경우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공무 출장, 학생, 긴급상황(구급차, 경찰, 군인)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li> <li>- 브루나이 정부가 허가한 운송업자들이 필수품을 운반할 경우, 정부로부터 발급받은 통행증 필요</li> </ul> </li> <li>▶ 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잠정중단(2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기간(보건부에서 위험성 평가 후 결정) 호텔에서 시설격리 필요</li> <li>* 브-싱 상호 그린레인: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협력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이 필요한 자는 시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이 가능한 제도</li> </ul> </li> <li>▶ 인도 및 인접국(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에 대한 입출국 제한조치(21.6.13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경유허가 잠정 중단, △해당 국가 항발 출국허가 잠정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외교여권 소지자 및 군인 제외</li> </ul> </li> </ul> </li> </ul> </li> </ul>   |
| 71 | 부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탄 입국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 취득 필요(20.3.23 이후 관광비자는 발급하고 있지 않음)</li> <li>* 모든 해외 입국자는 3주(21일)간 시설격리 의무(격리 및 검사 비용 자부담)</li> <li>* 외국에서 입국한 모든 승객은 출발 전 72시간 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검사만 인정) 제출</li> </ul>   | 75 | 사모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li> </ul> </li> </ul>  |
| 72 | 불가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부터 아래 조치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리아 국적자, 장기체류자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자로서 스인도, △방글라데시,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집트, 알제리, 튜니지, 모로코, 말리, 니제르, 차드, 수단, 에리트리아, 에디오피아,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가봉, 콩고, 나이지리아, 베냉, 토고, 아이보리코스트,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감비아,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남수단, 기니,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제외), △네덜란드, △미얀마, △부탄, △스리랑카, △파키스탄, △몰디브 출발자 입국 불가</li> <li>- 상기 지역에서 출발하여 불가리아에 입국하는 불가리아 국적자, 장기체류자 및 그의 가족은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필요</li> </ul> </li> <li>* 다른 모든 불가리아 입국자는 국적 및 출발지 불문하고 입국시 ①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증명서(완료 후 14일 경과 필요), 또는 ②코로나19 확진 PCR증명서 또는 신속항원검사(확진일 이후 15일-180일 사이 경과)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리아, EU회원국, 웅겐협약국(산 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및 바티칸 포함) 국적</li> </ul> </li> </ul>  | 76 | 사우디아라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3.부터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은 국가(한국 포함)에서 출발하는 외국인 입국 재개</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 모든 시우디 입국 외국인은 항공편 탑승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p> <p>※ 단, 아래 20개국에서 출발하거나 동 국기를 경유한 경우 입국 불가(최소 14일을 여타 국가에서 보낸 후 입국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국가 : 아르헨티나, UAE,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파키스탄, 브라질, 포르투갈, 영국, 터키,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레바논, 이집트, 인도, 일본</li> <li>- 사우디안, 외교관, 보건의료 종사자 및 가족의 경우 동 국가에서 출발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li> <li>- 한국에서 사우디로 입국하는 경우 UAE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번 조치로 UAE를 경유한 입국이 금지되어 여타 국가(예: 카타르)를 경유하는 항공편 이용 필요</li> </ul> <p>▶ 상기 20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입국하는 면역 미생성 외국인은 최소 7일간 사우디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격리(5.20.~)</p> <p>※ 시설 격리자는 격리 1일차 및 7일차에 PCR 검사하며, 7일차 검사가 음성일 경우 8일 차에 격리 해제</p> <p>※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면역 생성 외국인으로 인정(해당자는 입국 후 격리 및 PCR 검사 의무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증 미보유자) 아스트라제네카(2회), 화이자(2회), 모더나(2회), 얀센(1회) 중 한 종류의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한 자가 입국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li> <li>- (거주증 보유자) 'Tawakkalna' App에 면역 보유자(△2차 접종 원료자, △1차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자, 스코로나 확진 후 회복한 자 중 6개월이 지난지 않은 자)로 표기된 경우</li> </ul> <p>※ 면역 미생성 외국인이더라도, △사우디 국민의 가족 및 기정내 고용부, △승무원, △점부대표단, △외교관 및 가족, △보건분야 종사자, △면역생성 거주자의 기정내 고용부, △면역이 생긴 부모(가주증 보유)를 동행한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시설격리에서 면제되며 대신 자가격리 7일 필요(격리 6일차에 PCR 검사 실시)</p> |
| 77 | 상투메프린시페     | <p>▶ 2017.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삼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p> <p>※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p>   |
| 78 | 세네갈         | <p>▶ 2017.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p> <p>※ (항공기 탑승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입국 5일 이내 출발국 내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li> </ul> <p>※ (공항 입국 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li> <li>-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지, 경유지 체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li> </ul>   |
| 79 | 세르비아        | <p>▶ 모든 해외입국자는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자가격리 면제)</p> <p>※ 상기 서류 제출 예외 대상자(자가격리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목적(Business purpose)의 입국자(21.1.20.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48시간 전까지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입국자 정보 제출(입국자 성명, 여권번호, 구체 사업목적, 입국일과 입국지점, 항공편, 세르비아내 체류지 주소 등)</li> <li>·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PCR 테스트 또는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제출</li> </ul> </li> <li>- 세르비아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내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6개국(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헝가리)발 해당국 국적자(21.5.13.부터)</li> <li>- 세르비아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증 협정 체결국(그리스, 헝가리, 터키, UAE) 국민(AZ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여타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미만 동반 미성년자 백신접종 및 PCR 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li> </ul> </li> </ul> </li> </ul>   |
| 80 | 세이셸         | <p>▶ 21.3.25부터 외국인의 세이셸 입국 허용</p> <p>※ 입국 시 ①항공편 출발 최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②음성판정 이후 세이셸 건강여행허가증(Health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es.govtas.com), ③세이셸에서 코로나19 감염 시 격리 및 치료 등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보유, ④입국 후 세이셸 정부(www.tourism.gov.sc)가 지정한 숙소에서 숙박 필요</p> <p>※ 단,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입국 전 세이셸 건강여행허가증</p>  |
|    |             | <p>(Health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p> <p>※ 남아공, 브리질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입국 불가</p>   |
| 81 | 세인트루시아      | <p>▶ 20.7.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p> <p>※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a href="http://www.stlucia.org">www.stlucia.org</a>)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임을 증명하고 체류할 호텔명 제출</p> <p>※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p> <p>※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자부담)</li> </ul>   |
| 82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p>▶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p> <p>※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4시간 격리 조치(미국, 영국, 중국 등 고위 협국가로부터의 입국자는 입국 후 5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자부담))</p> <p>※ 입국 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부 홈페이지(<a href="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a>)상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제출(coronavirustaskforcesvg@gov.vc)</p>   |
| 83 | 세인트카츠네비스    | <p>▶ 모든 입국자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음성결과서 제출, 입국 후 14일 격리</p> <p>※ 백신접종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9일 격리로 단축 가능</p> <p>※ 9일 이상 체류 시 PCR 검사비용 \$150 자부담</p>  |
| 84 | 솔로몬제도       | <p>▶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p> <p>※ 6개월 이상 거주했고, 유효한 거주비자 있는 외국인은 Oversight Committee(OSC)의 재입국 승인시 예외적 입국 가능 / 입국전 21일간 총 3번(21일, 10일, 2일전) 코로나19 음성결과 제출</p> <p>※ 지정호텔에서 3주간 격리(비용 자부담)</p> <p>※ 솔로몬항공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1.10.30까지)</p>   |
| 85 | 수단          | <p>▶ 국적과 상관없이 6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96시간 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p> <p>※ 입국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면제</p> <p>※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출발 승객의 경우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시 및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p> <p>※ 인도 출발 모든 직항 및 지난 14일간 인도에 체류한 적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국 금지</p> <p>※ 이집트 및 에티오피아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도착 후 코로나19 재검사 실시</p>   |
| 86 | 수리남         | <p>▶ 자국민 및 영주권자 제외 모든 여행객 입국금지</p> <p>※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 비정기적 변동</p> <p>※ 암스테르담 항공편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하나, 긴급한 경우로 제한하고 네덜란드 출입국사무소와 수리남 정부의 사전허가 필요</p>   |
| 87 | 스리랑카        | <p>▶ 21.5.21. 23:59 ~ 5.31. 23:59(현지 시간) 모든 항공 승객 입국 금지(21.5.19.)</p> <p>※ 스리랑카 국제공항(BIA, MRA)에서 12시간 이내 경유는 가능</p> <p>※△ 긴급 착륙 변경, △화물 항공, △인도적 목적의 비행, △기술착륙(technical landing), △무승객 페리비행(ferry flight)은 허용</p>   |
| 88 | 스웨덴         | <p>▶ 아래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 여행자 대상 입국금지(21.5.31까지 유지)</p> <p>※ (예외 1) EU(유럽연합)/EEA(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및 체류허가증 보유자 또는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자 (3.31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발 입국제한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은 EU 역외국가로 원칙적으로 입국금지</li> </ul> </p> <p>※ (예외 2) 학교,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거주자(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적용)</p> <p>※ (예외 3) 스웨덴 내 특별히 필요한 용무가 있거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예: 보건 분야 전문가, 운송업 종사자, 외교관/영사 및 그 가족, 공무 출장자, 국제기구 종사자, 군인, 유학생, 단순 경유자, 필수적인 가족 관련 사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자, 인도적 사유 등)</p> <p>※ 단, 각 사안별로 국경 통제 당국(주무처: 스웨덴 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입국여부 결정</p> <p>▶ 모든 외국인은 입국시 48시간 내 검사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LAMP, TMA, antigen 검사방식 인정) 제출 의무</p> <p>※ 입국 후 자가격리 7일 권고</p>  |
| 89 | 스위스         | <p>▶ 21.2.8.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p>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의무(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분, 항공기 탑승 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2.부터 △고위험국지역(한국 미포함)에서 출발한 모든 해외입국자, △그 외 지역에서 출발한 해외입국자 중 항공, 기차, 버스, 선박을 이용한 경우(한국에서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포함, 개인 차량으로 입국하는 경우 예외) 개인정보를 제출</li> <li>- 입국 전 <a href="http://swisspl.admin.ch">swisspl.admin.ch</a>에 접속하여 요청 정보를 기입하고 전송하면 QR코드가 메일로 개별 전송, 입국 시 전송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확인 또는 출력본 제출</li> <li>* 고위험국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능한 장소(호텔 및 기타 숙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자세한 국가/지역은 스위스 연방 보건청 또는 주스위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li> <li>* 비위험국에서 출발하여 고위험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항을 이탈하지 않고 환승 시 격리 면제)</li> </ul>  |
| 90 | 스페인    | <p>▶ 20.7.4.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 이스라엘, 영국, 일본(입국 허용 대상국은 매달 업데이트)</li> <li>*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시증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도착 전 2일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 ② 발열 체크, ③ 대면 심사</li> </ul> </li> <li>* 상기 국가 외 EU+ 역외국의 경우, EU 거주자,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은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li> </ul> <p>▶ 20.11.23.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원본 제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EU+ 역내 29개국 및 상기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외 모든 나라(한국은 미포함)(고위험국은 매 2주마다 업데이트)</li> </ul> <p>▶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1.2.3.부터 브라질 및 남아공발 항공편 입국 제한, 21.3.8.부터 지역사회 확산국가* 출발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브라질, 남아공, 보츠와나, 코모로, 가나, 케냐, 모잠비크, 탄자니아, 짐비아, 짐바브웨, 폐루, 콜롬비아, 인도</li> </ul>  |
| 91 | 슬로바키아  | <p>▶ 21.2.17.부터 모든 외국(한국 포함) 방문 후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아래 의무 부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슬로바키아 입국 전 사전등록*(경찰검문 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등록 웹사이트(<a href="https://korona.go.sk/en/ehrancna">https://korona.go.sk/en/ehrancna</a>)</li> <li>- 항공편을 통하여 입국하는 자는 슬로바키아 교통부 온라인 승객정보양식도 제출 필요 (<a href="https://www.mindop.sk/covid">https://www.mindop.sk/covid</a>)</li> </ul> </li> <li>② 입국 즉시 자가격리실시 및 주치의(또는 자치주 보건의)에 원격 신고</li> <li>③ 입국 후 8일 이후에 PCR 진단검사 실시(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유럽국가(EU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만 방문한 자는 무증상일 경우 14일 후 진단검사 없이도 격리해제 가능</li> </ul> </li> <li>* 기업인 출장 목적 입국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음(격리면제 시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li> </ul> <p>* 백신 접종자* 또는 원치자*는 외국 방문 후 슬로바키아 입국시 특정 조건(①,②)***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입국 첫날 PCR 검사 실시 가능/격리면제는 아니므로 사전등록 및 음성판정시까지 자가격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RNA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자</li> <li>- vector 백신 1차 접종 후 4주가 경과한자</li> <li>- 코로나19 원천 180일 이내 mRNA/vector 백신 1차 접종을 한 자로서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li> </ul> </li> <li>** 원치자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시점 180일 이내 코로나19로부터 원치된 자</li> </ul> </li> </ul> <p>*** 특정 요건(동시 충족 필요)</p> <p>(1) 입국 전 14일 동안 유럽국가(EU 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만 방문(한국 방문자는 해당사항 없음)</p> <p>(2) 입국시점 기준 48시간 이내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p>   |
| 92 | 시에라리온  | <p>▶(입국 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Traveler's Authorization)* 제시</p>   |
|    |        | <p>* 스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시에라리온 여행포털(<a href="http://www.travel.gov.sl">www.travel.gov.sl</a>)에 게시된 Passenger Locator Form,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20.7.17)</p> <p>▶(입국 후)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or Form 제출</p> <p>* 간이검사가 △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 △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p>   |
| 93 | 싱가포르   | <p>▶ 20.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원칙적 금지(국민,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만 입국 가능) 및 예외적 입국 시 21일 시설격리 원칙(단,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사전입국 승인 필요)</p> <p>* 21.5.7.부터 원칙적으로 모든 해외입국자(한국 포함)는 21일간 정부시설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입국자들은 입국 직후, 격리 14일차, 격리 21차에 PCR 검사 실시</li> </ul> </p> <p>* 21.1.24.부터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 대상 도착 직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p> <p>* (단기 방문 예외적 허용) 일방적 국경개방국 대상 예외적 입국 허용(싱가포르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필요, 관련 상세 절차 사전에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방적 국경개방국(단기 방문 허용, 격리 면제)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li> <li>- 신속 통로(필수 목적 공무 및 비즈니스 단기 방문) 잠정 중지</li> </ul> </p> <p>* (자택격리 허용) 감염 저위험군 및 중위험군 지역별 입국자 자택격리 허용(그 외 정부 지정시설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 저위험군(7일간 자택격리) : 홍콩, 마카오</li> <li>- 단, 대만, 피지 출발 입국자는 14일 정부시설 격리 후 나머지 7일은 자택격리</li> </ul> </p> <p>* (PCR 검사 의무) 싱가포르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싱으로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필요(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일방적 국경개방국 및 감염 저위험군발 입국자 제외</li> <li>- 입국 직후 공항에서 전원 PCR 검사 시행</li> </ul> </p> <p>* (해외입국자 검사비 등 자부담) 21.1.1.부터 ①검사비, ②격리비, ③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p> <p>*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관련 조치) 최근 14일 이내 방글라데시,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를 방문한 모든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및 단기 방문객에 대해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p> <p>*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 21.1.31.부터 싱가포르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출입국 심사 시 보험 약관 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 방문자는 \$3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 △취업비자 소지자는 \$1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싱가포르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시 대비)</li> </ul> </p> |
| 94 | 아랍에미리트 | <p>▶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20.7.1)</p> <p>* (아부다비)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제3입국용 포털사이트(<a href="http://uaeentry.ica.gov.ae">uaeentry.ica.gov.ae</a>)에서 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등 입력, △항공기 팀승 전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자가진단앱(AI Hsn)을 다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부다비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공항에서 PCR 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격리 유지</li> <li>- 방역조치 완화 국가*(한국 포함-21.4.18까지 유호)발 입국자 : 10일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UAE 백신접종자의 경우는 입국 6일차 / 비접종자의 경우 6일, 12일차에 PCR 재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격주로 변동되므로 입국 전 에티하드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 필요</li> </ul> </li> <li>- 방역조치 완화 국가 외 국가발 입국자 : 10일간 자가격리 후 아부다비에서 6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일차에, 12일 이상 체류할 경우 6일차와 12일차에 PCR 검사 실시</li> </ul> <p>* (두바이) 20.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으로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li> <li>- 21.1.31.부터 두바이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거주비자 소지자 포함)은 항공기 팀승 전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12세 미만 어린이, 중증도 및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PCR 검사 면제)</li> <li>-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인도, 이집트 등 지정된 국가(주두바이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에미레이츠 항공 홈페이지 참조,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에서 출발하여 두바이에 도착하는 경우 도착 시 PCR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며(결과 통보 시까지 호텔 또는 자가 등에서 격리), 해당 국가를 출발하여 두바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필요(기타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PCR 검사 결과 불필요)</li> <li>- 출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남아공에 체류한 적이 있는 자는 두바이 입국 금지</li> <li>-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li> </ul> </p>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GDRFA)의 사전 승인 필요, △두바이 외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는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아부다비 아민당국(ICA) 승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 △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 △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li> </ul> <p>* 두바이 공항으로 입국하여 아부다비로 이동하는 여행객은 48시간 이내에 UAE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DPI(레이저 신속검사) 음성확인서를 검문소에 제출(검문소 담당자에 따라 48시간 이내 한국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린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은 도착 후 10일 자가격리</li> <li>- PCR 음성확인서로 진입 시 4일째와 8일째 각각 PCR 검사 실시하고, DPI 음성확인서로 진입 시 3일째와 7일째 각각 PCR 검사 실시</li> <li>- 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써 Alhosn 앱 상 항체 활성화 아이콘(active icons : letter E or Gold Stars)을 받은 사람은 아부다비 진입 시 음성확인서 제출 및 PCR 재검사 면제</li> </ul>   |     |        | <p>5일 이후 PCR 테스트 결과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음성확인서 최소 14일간 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li> <li>▶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직후 PCR 음성 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li> <li>▶ 의무적 호텔격리(Mandatory Hotel Quarantin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14일의 기간 동안 고위험국 'Category 2' 71개 국가/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입국자와 모든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는 입국 후 14일간 정부 지정 호텔(Tifco Hotel 그룹 소속 호텔)에서 격리 의무</li> <li>- 입국 전 지정 호텔에 사전에 약 및 지불 필요</li> <li>- 비용은 1,875유로(12박 패키지, 성인 1인 기준)</li> <li>- 입국 10일 이후 PCR 테스트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조기해제 가능</li> <li>- 동 조치를 위반하는 해외입국자는 2,000유로 벌금 혹은 1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li> </ul> </li> <li>* 고위험 'Category 2' 국가(62개 국가/지역) : UAE, 앙골라, 보츠와나, 부룬디, 카보베르데, 콩고, 에스와티니,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나미비아, 르완다, 세이셸,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바레인, 필리핀,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카타르, 오만, 몬테네그로, 안도라 공국, 세르비아,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미국, 코스타리카, 조지아, 인도, 이란, 몽골, 네덜란드, 맹길라</li> </ul> |
| 95 | 아르메니아 | <p>▶ 모든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러시아어 또는 아르메니아어)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한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미소지 시 공항 및 육로 검문소에서 PCR 검사 실시(자부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 격리)</p> <p>* 아르메니아 국경 검문소 비자발급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공관 및 e-visa 시스템을 통해서만 입국비자 발급 가능</li> <li>* 조지아, 이제르바이잔, 터키로부터의 육로 입국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li> </ul>  |     |        | <p>▶ 상기 의무적 호텔격리 면제 가능한 자(21.4.17.부터 적용)</p> <p>o 아래 백신접종증명서 원료(fully vaccinated)한 자*</p> <p>* 백신접종증명서(certification of vaccination)를 소지해야 하며, 동 증명서에는 해당인에 대한 백신접종 사실 확인, △접종일자, △해당국의 백신프로그램 담당기관 포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Phizer-BioNtecn) : 2차 접종 후 7일 경과</li> <li>- 모더나(Moderna) : 2차 접종 후 14일 경과</li> <li>- 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 Vaxzevria(Covishield) : 2차 접종 후 15일 경과</li> <li>- 존슨앤존슨(Johnson&amp;Johnson/Janssen)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li> <li>* 동 증명서를 소지한 자와 동반하는 자(dependent person, 미성년자 등)도 면제</li> <li>o 생후 28일 이하 신생아 등반 가족</li> <li>o 대리모 행위(surrogacy) 관련 방문자</li> <li>o 치료 목적의 여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간: 불가피적, 필수적, 긴급한 치료를 위해 여행한 환자</li> <li>- 환자의 간병인(carer) 및 자녀 등 동반자(dependant), 환자가 어린이일 경우 환자의 부모 및 형제에도 면제 적용</li> </ul> </li> <li>o 상기 면제는 의무적 호텔격리 면제만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자가격리 의무 면제는 아님</li> </ul>  |
| 96 | 아르헨티나 | <p>▶ 21.5.21.까지 영주권자 및 입국허가자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p> <p>* 외국인 입국 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외적 승인 필요</p> <p>* 아르헨티나 국민, 영주권자 등 해외입국자는 △20.12.16.부터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이민청 웹사이트(<a href="http://www.migraciones.gob.ar">www.migraciones.gob.ar</a>)에 서약서 제출 시 첨부 및 비행기 탑승 시 제시, △입국 후 PCR 검사 2회(입국시, 입국 7일 후) 실시(비용 자부담), △입국 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7일 자가격리*, 양성 확진자는 정부 지정시설에서 격리(비용 자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관의 경우도 상기 격리조치 적용하나 7일 의무 격리 실시 미작용</li> </ul> <p>* 입국 시 준수 사항 : △아르헨티나 이민청 웹사이트에 서약서 제출, 스코로나19 휴대폰 어플 'Ciudar' 설치, △비영주 외국인은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격리, 입원 등)을 제한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공식 진단서 미제출 시 아르헨티나행 비행기 탑승 금지 및 아르헨티나 입국 금지</p>  |     |        | <p>▶ 21.6.1.까지 국경봉쇄 조치 재연장</p> <p>* 단, 외국인의 경우 △주재국 거주허가증과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시 입국가능</p> <p>* 입국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진단서 상 QR코드는 의무사항에서 입국시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변경됨</p> <p>* 바쿠-이스탄불 및 모스크바(2.18재개), 두바이(3.2재개), 키예프(3.8재개), 트빌리시(3.19재개) 항공편 운행</p> <p>*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p>  |
| 97 | 아이슬란드 | <p>▶ 자국민, EEA/EFTA 회원국 국민(직계가족 포함) 및 아래 입국 가능 국가 출발 여행객 대상 입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가능 국가)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li> <li>- 상기 외 유효한 시증 또는 거주허가 소지한 외국인 입국 가능</li> </ul> <p>* 입국 허용 시 검역강화조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동등감시 앱 설치 권고)</li> <li>②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증명서(출발 72시간 이내 실시) 제시(영문 기재 필수)</li> <li>③ 입국 시 적합한 격리 장소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시설격리 의무(자가격리 중에 변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설 격리로 전환)</li> <li>- 검사 및 시설 격리 비용 4.30까지 무료(21.4.1.)</li> <li>④ 입국 후 1차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5-6일 시점에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2차에 걸쳐 음성확인된 경우 격리 해제(21.1.15.)</li> <li>-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의 기간(5-6일) 동안은 시설격리</li> <li>- 검사 및 시설 격리 비용 4.30까지 무료(21.4.1.)</li> </ol> <p>* 21.3.26.부터 입국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상기 검역강화조치 중 음성확인서 제출 및 PCR 검사 의무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는 유지</li> <li>- PCR 음성확인서는 경유지 공항이 요구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침 권고</li> </ul> | 100 | 아제르바이잔 | <p>▶ 21.6.1.까지 국경봉쇄 조치 재연장</p> <p>* 단, 외국인의 경우 △주재국 거주허가증과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시 입국가능</p> <p>* 입국시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진단서 상 QR코드는 의무사항에서 입국시 편의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변경됨</p> <p>* 바쿠-이스탄불 및 모스크바(2.18재개), 두바이(3.2재개), 키예프(3.8재개), 트빌리시(3.19재개) 항공편 운행</p> <p>*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p>  |
| 98 | 아이티   | <p>▶ 21.2.9.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p> <p>*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p>   | 101 | 아프가니스탄 | <p>▶ 21.4.19.부터 국제선 항공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들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p> <p>* 출발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p>   |
| 99 | 아일랜드  | <p>▶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코로나 PCR 검사하여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p> <p>▶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발 입국자를 제외한 여타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최소</li> </ul>   | 102 | 알제리    | <p>▶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17.)</p> <p>* 단, 현지 진출 일부 기업 및 외교·공무수행을 위한 입국 시, 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20.8.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일간 자가격리 필요(비용 자부담)</li> </ul> <p>*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 등에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1.1.24.)</p>  |
|    |       |   | 103 | 앙골라    | <p>▶ 20.9.부터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국 허용(여행상용 등 단기 방문객 입국 불가)</p> <p>* 모든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입국 시 별도로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p> <p>*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혈청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p>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 20.9.29.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전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 대처위원회 홈페이지( <a href="http://covid19.gov.ao">http://covid19.gov.ao</a> )에 등록 필요(RT-PCR 음성확인서 포함)   |
| 104 | 앤티가바부다 | ▶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br>*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
| 105 | 에리트레아  | ▶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20.3.25.)   |
| 106 | 에스와티니  | ▶ 브라질 등 고위험 국가군 49개국(한국 제외)* 방문객 대상 입국금지(20.10.1.)<br>*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br>※ 입국 시 △출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코로나 유증상자는 검사 실시(자비 부담) 및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20.10.1.)  |
| 107 | 에스토니아  | ▶ 벨로 공지시까지 한국 입국자에 대해 의무 자가격리 10일 적용<br>* 에스토니아 입국 72시간 이내, 혹은 입국시 공항에서 1차 테스트 후 입국 최소 6일 경과후 2차 테스트를 받아 모두 음성이 나온 경우 격리 조기해제 가능  |
| 108 | 에콰도르   | ▶ 21.3.22.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경유승객 제외) 입국 전 3일 이내 실시된 ①RT-PCR 음성확인서, ②항원검사 음성결과서 또는 ③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의무(2세 미만 제외)<br>※ 백신은 Pfizer-BioNTech, Sinovac, AstraZeneca 3종만 인정<br>※ 입국 시 코로나19 유사증상(발열, 기침, 몸살, 후각미각 상실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항원 검사 실시<br>-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자부담 숙소에서 10일 격리<br>※ 21.4.9.부터 브라질 방문(경유, 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①RT-PCR 음성확인서, ②항원검사 음성결과서 또는 ③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br>- 서류 제출과 상관없이 관광부에서 승인한 임시숙소에서 10일 격리 의무<br>- 숙소 예약 : 관광부 홈페이지( <a href="https://www.turismo.gob.ec/comunicado-6/">https://www.turismo.gob.ec/comunicado-6/</a> )   |
| 109 | 에티오피아  | ▶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 전 5일(120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진단검사 명시 필요) 제출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단, 10세 미만 어린이와 경유 승객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20.10.5.)<br>*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7일, 미소지 시 14일 자가격리<br>* 경유승객은 공항 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 발급(20미불), 경유 최대 시간은 72시간(72시간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추가 50미불 지불)  |
| 110 | 엘살바도르  |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br>* PCR 검사 외 LAMP, NAAT 우전자 검출 검사 방식도 인정<br>※ 코로나 백신증명서를 보유한 사람은 음성확인서 대신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시하고 입국 가능<br>※ 외교관, 항공 승무원,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 111 | 영국     | ▶ 21.05.17.부터 신호등 체계(Traffic Light system) 적용(국가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측정 하여 녹색(Green), 황색(Amber), 적색(Red)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상이한 방역지침 적용)<br>※ 녹색국가(Green List) 발 입국자 방역지침<br>-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br>- 출국 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br>- 입국 후 2일차에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br>※ 황색국가(Amber List) 발 입국자 방역지침<br>-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br>- 출국 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br>- 입국 후 자가격리 10일(5일 자가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한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 이용 가능 (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비용 자부담))<br>- 입국 2일차 및 8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br>※ 적색국가(Red List) 발 입국자 방역지침<br>-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br>- 출국 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br>- 입국 후 시설(호텔)격리 10일(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 이용 불가)<br>- 입국 2일차 및 8일차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입국 전 사전 온라인 예약 필요)<br>▶ 신호등 체계 등급별 대상 국가(21.5.17. 기준)<br>※ 녹색국가(Green List) : 뉴질랜드, 브루나이, 사우스 조지아 앤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세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인트 헬레나 · 트리스탄다큐나 · 아센시온 섬,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지브롤터, 페로 제도, 포르투갈, 포클랜드 제도, 호주<br>※ 황색국가(Amber List) : 녹색 및 적색 국가 외 모든 국가(한국 포함)<br>※ 적색국가(Red List) : UAE(아랍에미리트), 기아이나, 나미비아, 남아공, 네팔, 레소토, 르완다, 말라위, 모잠비크, 몰디브, 링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보즈와나, 블리비아, 부룬디, 브라질, 세이셸, 소말리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앙골라, 에스와티니,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오만, 우르과이, 인도, 잠비아, 짐바브웨, 칠레, 카보베르데, 카타르, 케냐,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터키, 파나마,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령 기아나, 필리핀  |
| 112 | 오만    | ▶ 오만 국적자 및 거주비자 소지자 외 입국 금지 (21.4.8. 정오부터 무기한)<br>※ 도착 전 14일간 레비논, 수단, 남아공, 브라질,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기니, 가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영국, 인도, 파키스탄, 링글라데시를 방문 혹은 경유한 적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비자 소지 여부 불문)<br>- 외교관, 의료인력(health workers) 및 그 동반가족 예외<br>▶ 격리 및 검역강화 조치는 전과 동일<br>※ 모든 입국자는 Sahala 플랫폼을 통해 지정된 격리시설 예약<br>- Sahala 접속: (크롬, Firefox 브라우저에서) <a href="https://covid19.emushrif.om">https://covid19.emushrif.om</a><br>※ 7일 격리, 격리 8일차부터 (자발적) 재검 실시 →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재검 미실시시 14일 격리)<br>- 격리 종 출국(8일 이하 체류) 불가<br>- 격리기간 만료 후 추적팔찌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 등 장소에서 제거(개별 제거시 벌금 징수)<br>※ △도착전 72시간 이내 시행 PCR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여행자보험 가입 △입국직후 PCR검사(유료) 실시 △Tarassud+ 앱 설치 및 추적팔찌 착용<br>- 도착 전 △Tarassud+ 앱을 설치하고, △보협증서번호 입력, △PCR검사 및 추적팔찌 비용 (25 오만리얄, 7.5만원 상당) 선결제   |
| 113 | 오스트리아 | (1) 입국 제한 조치 (2021.5.19. ~ 2021.6.30)<br>○ (그룹 A)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수<br>- 해당국가: 한국, 안도라, 호주,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리히텐슈타인, 그리스, 아일랜드, 아이스לנד, 이스라엘, 이태리, 라트비아, 럭셈부르크, 말타,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오, 싱가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체코, 헝가리, 바티칸<br>-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 부과 (비용 본인 부담)<br>- 단, 입국전 10일 이내 오스트리아 또는 그룹A에 속한 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br>- 일상 통근자: 백신 접종 확인서 혹은 코로나 확진 후 회복 증명서 제시할 경우 입국 가능<br>○ (그룹 B) 입국시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중 하나의 증명서 제시 필수<br>- 해당 국가: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사이프러스<br>-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 후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10일간 격리 의무 부과(입국 후 5일째 되는날부터 코로나19 검사(항원검사 포함) 실시 가능)<br>-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시할 경우 입국 가능하며 격리 의무 미부과<br>○ (그룹 B2) 입국 금지(예외적 허용)<br>- 해당 국가: 브라질, 인도, 남아공<br>- 예외 대상: 오스트리아 국적자, EU/EEA 국적자,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국적자 및 가족구성원, 오스트리아 정부 발급 D비자 이상 체류 허가증 소지자, 영주 및 체류허가법(BGBI. I. 100/2002)에 따른 오스트리아 체류가 가능한 자, 오스트리아에 근무하는 또는 근무 예정인 외교 공관원, 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구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성원, 인도지원사업 관련 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예외 대상은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및 10일간 격리 의무(입국 후 5일째 되는날부터 코로나19 검사(항원검사 포함) 실시 가능)</li> <li>-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 가능하며 격리 의무 미부과</li> </ul> <p>○ (상기 외 국가) 입국 금지(예외적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 대상은 그룹 B2와 동일</li> <li>- 단, 예외 대상은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제시</li> <li>- 상기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 및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조건으로 입국 가능(입국 후 5일째 되는날부터 코로나19 검사(항원검사 포함) 실시 가능)</li> <li>- 공무 출장 목적, 외교관 신분증 소지자, 의료 목적 입국자: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 가능하며 격리 의무 미부과</li> </ul> <p>○ 예측 불허 상황 돌발 혹은 가족간 긴급한 사유로 예외 입국 허용이 필요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서, 혹은 코로나 확진 후 회복 증명서 중 하나 제시 필수</li> <li>-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 테스트 수행 의무 부과</li> </ul> <p>○ 10세~18세 미성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 B(브라질, 인도, 남아공) 외 국가에서 입국시: 백신접종 증명서 혹은 코로나19 회복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시</li> <li>- 상기 증명서 제시 불가능시 : 입국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 의무 부과</li> <li>- 그룹 B2 국가로부터 입국시, 엄격한 입국정책 적용</li> </ul> <p>○ (항공기 착륙금지 조치)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오스트리아 착륙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조치 종료일 : 2021.6.6.(화)</li> <li>- 적용 국가 : △남아프리카공화국(2020.12.30.부터), △브라질(2021.1.25.부터), △인도 (2021.4.29.부터)</li> </ul> <p>(2) 입국시 백신접종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자, 코로나19 확진 후 회복한 자,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자에 대해 오스트리아 입국시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출발국가별 별도 입국제한 조치 시행</li> <li>○ 인정 백신 종류 : 바이오엔텍/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얀센), 모더나, 시노팜</li> <li>○ 백신접종 인정 범위 : 주재국 보건부가 제시한 별도 양식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백신 접종 후 22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간 유효</li> <li>- 기한 내에 2차 백신 접종 시 1차 백신 접종 시점으로부터 총 9개월 유효</li> <li>- 1회 접종이 가능한 백신(예, 안센) 접종 후 9개월 유효</li> </ul> </li> </ul> <p>(3)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Pre-Travel-Clearance, PTC System)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일 : 2021.1.15.(금) 0:00부터</li> <li>○ 적용 대상 : 항공 및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li> <li>○ 등록 정보 : 인적사항, 체류예정 주소, 출입국 날짜 및 이동수단(항공편명) 등</li> <li>○ 온라인 사전등록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스트리아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PTC System 전용 홈페이지 이용</li> <li>- 오스트리아 정부포털(<a href="http://www.oesterreich.gv.at">www.oesterreich.gv.at</a>)을 통해 등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li> <li>-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특정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체류 지역 보건소 등 관할 관청(MA15 등)에 직접 제출</li> <li>- PTC 홈페이지 주소 및 수기 작성 양식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지사항 참고</li> </ul> </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등록 확인서를 출력 또는 휴대기기에 저장하여 출입국 심사시 제시 필요</li> <li>○ 예외 대상 : 단순 경유 승객</li> <li>- 일상통근자의 온라인 사전등록 의무화 및 주간(1주일에 한번) 코로나19 검사 실시 의무(입국시 제시)</li> </ul> <p>(4) 단순 경유목적 입국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연내 입국시 :최종 도착국가(EU 연내 오스트리아 주변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지참</li> <li>- 경유 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경유 확인서' 작성 및 제출</li> <li>○ EU연외 출국시 : 출국 당일 입국하여 오스트리아내 정차없이 출국한다는 증빙서류 지참</li> </ul>  |
| 114 | 온두라스  | <p>▶ 20.8.17.부터 국제공항 및 육로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 금지 가능)</p> <p>* 21.3.29.부터 영국 또는 남아공, 파나마, 모든 남아메리카 국가 출발 외국인 또는 이전 15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온두라스 거주증 소지 외국인 및 온두라스 국적자는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p> <p>* 해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됨</p> <p>*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a href="https://prechequeo.inm.gob.hn">https://prechequeo.inm.gob.hn</a>)를 통해 입국 신청</p> <p>*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ic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 제출(경유 입국자의 경우,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 결과서 소지 필수)</p>  |
| 115 | 요르단   | <p>▶ 요르단 도착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5세 이하 면제)</p> <p>*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5세 이하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에 진단검사 비용 결제 및 결제 영수증 항공기 체크인 시 제출(암만 퀸알리아국 제공항 도착 시 <a href="https://registration.questlabjo.com">https://registration.questlabjo.com</a>, 아카바 킹후세인국제공항 도착 시 <a href="https://covid19.biolaab.jo">https://covid19.biolaab.jo</a>)</li> <li>-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면제</li> </ul> <p>*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p> <p>*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p> <p>*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인 경우 환승 허용</p>   |
| 116 | 우간다   | <p>▶ 모든 입국자는 텁승 시점 기준 △120 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스체온 37.5도 이하, △코로나19 유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없을 경우 자가격리 해제</p> <p>* 단, 인도, 미국, 영국, UAE, 터키, 남아공, 에티오피아, 케냐, 남수단, 탄자니아로부터 입국하는 자가 입국시 실시한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격리 시 설로 이동</p> <p>▶ 21.5.1.부터 인도-우간다 간 여객기 운항 잠정 중단</p> <p>* 최근 14일 내 인도 체류한 자는 경유지와 상관없이 우간다 입국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외사항) △화물 항공편, 긴급 항공편, 당국에게 허가된 인도적 지원의료 및 외교적 목적의 항공편은 운항이 가능하며, △인도에서 치료 후 귀국하는 우간다 국적자는 입국 가능</li> </ul> <p>▶ 미국, 영국, UAE, 터키, 남아공, 에티오피아, 케냐, 남수단, 탄자니아로부터 입국 시 비필수적 목적의 우간다 여행 자제 권고</p> <p>* 동 국가에서 우간다로 입국하는 자는 엔테베 국제공항 등 입국지점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필요(최대 USD65 비용 자부담)</p> <p>* (예외사항)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PCR 검사 불요</p>  |
| 117 | 우루과이  | <p>▶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외국인 우루과이 입국 금지</p> <p>*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 : 외국인 영주권자,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스난민,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p> <p>*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아래 조건 충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li> <li>○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li> <li>- 단,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자가격리 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자(출발 전 20일~90일 내 실시한 PCR 검사 혹은 항원진</li> </ul> </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단검사 양성확인서 제시 필요)</p> <p>② 백신접종 완료자(출발 전 6개월 내에 자국에서 승인된 백신의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효과적 면역형성에 필요한 대기기간(한국의 경우 14일)이 경과된 자로서, 자국 보건당국에 의해 발행된 백신접종증명서 및 상기 대기기간이 경과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시 필요)</p> <p>* 상세한 조건 및 내용은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p>  |     |       | <p>*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사르엘세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중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도착 공항에서 PCR 검진 실시(30S 자부담)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예약된 숙소에서 대기</p> <p>*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보험 필요. 항공사 조치가 수시 변경되므로 항공사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의 필요</p> <p>* 21.5.7.부터 면이바이러스 발생국으로부터 이집트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장 소(공항, 항구, 육상 국경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p>   |
| 118 | 우즈베키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편 방역등급상 적색국가(한국 등)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스탑승 전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제출 의무, △거주등록 주소지 혹은 지정 호텔 등에서 2주간 격리 시행(20.4.15.)</li> <li>*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한국 내 PCR 검사기관 지정(주우즈베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및 해당 항공사 확인 요청)</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0.부터 각 국가를 5그룹(A-E그룹)으로 나누어 입국 제한 조치 실시(20.12.3.)</li> <li>* 한국은 D그룹 국가로 입국 시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 지침 →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기타 그룹별 국가 및 조치 내용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그룹 국가 : 조건 없이 입국 가능</li> <li>○ B그룹 국가 : C그룹 국가 중 코로나19 위험도가 낮은 국가</li> <li>○ C그룹 국가 :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48시간 이내 실시) 지침시 자가격리 면제(코로나19 음성확인서 미지참시 10일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li> <li>○ D그룹 국가 :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하나, △입국 시 코로나19 PCR(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내 실시) 지침,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실시(자가격리 종료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li> <li>○ E그룹 국가 : 상기 A-D그룹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로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 건강, 학업, 긴급, 거주지 복귀 사유 등 예외적 사유로만 입국 가능</li> </ul> </li> <li>○ 자가격리 면제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적 업무, 건강, 긴급한 사유로 입국 후 120시간 이내 출국하는 자</li> <li>- 36시간 이내 환승을 위해 입국한 자</li> </ul> </li> </ul> </li> </ul>   |
| 119 | 우크라이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9.28.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li> <li>▶ 2021.3.22.부터 외국인 입국자들은 입국전 72시간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진단 PCR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의무</li> <li>* 동 의무 면제 대상 : 12세 미만 어린이,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기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li> <li>* 음성확인서 미제출 영주권자의 경우, 입국은 허용하되 자가격리 모니터링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14일 자가격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실시 집주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자가격리 모니터링 앱을 적동시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자정된 시설에서 14일간 시설격리</li> <li>- 아래 링크에서 앱 다운받아 설치<br/><a href="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a.gov.dia.quarantine">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ua.gov.dia.quarantine</a></li> </ul> </li> <li>- 우크라이나 입국후 시행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판정시 위 격리상태 종료</li> <li>* 2021.5.2.부터 인도발 외국인 또는 최근 14일간 7일 이상 인도 체류 외국인 입국 불허</li> <li>* 외국인 입국자들은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의무면제대상 : 영주권자, 駐우크라이나 외교관/기족, 정부대표단, 난민 등</li> </ul> </li> </ul> | 124 | 이탈리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이 인도 방문 허용</li> <li>*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21.4.1.부로 e-visa 발급 재개, 단 관광비자를 제외한 상용/의료/기병인/회의 등에 한해 발급)</li> <li>▶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 (<a href="http://www.newdelhiairport.in">www.newdelhiairport.in</a>)에 등록하고, 인도 입국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 소지 필요</li> <li>▶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해외 입국자는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없이 14일간 자가모니터링,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 (<a href="http://www.newdelhiairport.in">www.newdelhiairport.in</a>)에 업로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li> <li>* 영국, 유럽 및 중동발 해외입국자의 경우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하고 음성인 경우 14일 자가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환승 시 일반 해외입국자와 따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되며,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환승편 탑승 허용(검사 및 결과 확인에 6-8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승편 시간 고려 필요)</li> </ul> </li> <li>- 다만 주재국 국내선 이동의 경우에는 영국, 브라질, 남아공 출발 승객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이후 연결편 탑승이 가능하고, 그 외 유럽 및 중동발 승객은 검사는 공항에서 실시되어, 검사결과는 목적지에서 통보 받음</li> </ul> </li> <li>* (마하라슈트라라 뭄바이市) 유럽, 중동, 남아공, 브라질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뭄바이 공항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 시설격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유증상자의 경우 지정 병원에 입원</li> <li>- 격리 5-7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 남은 기간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li> <li>- (시설격리 예외 대상자) 65세 초과 노약자,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동반 부모, 심각한 질병이 있어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자, 인도적 목적 입국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1, 2차 접종증명서 및 자가신고서 제출 필요), 위급한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의료전문가</li> </ul> </li> <li>* (타밀나두州) 영국, 브라질, 남아공, 유럽, 중동 지역을 제외한 해외입국자(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입국자 해당)는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 (<a href="http://www.newdelhiairport.in">www.newdelhiairport.in</a>)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발열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 없이 14일간 자체점검 실시</li> <li>-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 (<a href="http://www.newdelhiairport.in">www.newdelhiairport.in</a>)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자가격리 → 자가격리 종료 후 RT-PCR</li> </ul> |
| 120 | 이라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항 운영 및 상업용 항공 운항 재개(20.7.23.)</li> <li>* 모든 입출국자는 텁승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침(20.8.17.)</li> <li>* 입국 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20.11.2.)</li> <li>* 모든 입국자 입국 후 거주지 또는 사업장 내 격리 14일 의무(21.4.26.)</li> <li>(쿠르드지방정부) 21.3.8.부터 모든 외국인의 쿠르드지역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하는 외국인은 출국일 기준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항공사별 텁승 가능 PCR 검사 인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확인 필요</li> </ul> </li> <li>* 21.4.20. 이후 인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쿠르드지역 입국 금지</li> <li>* 쿠르드 국민의 고위험국* 여행을 금지하며, 해당 국가로부터 귀국한 쿠르드 국민은 14일 자가격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그리스, 아일랜드, 롤센 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 브라질, 미국, 인도, 남아공, 호주, 네덜란드, 일본, 잠비아</li> </ul> </li> </ul> </li> </ul>  | 125 | 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li> <li>*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21.4.1.부로 e-visa 발급 재개, 단 관광비자를 제외한 상용/의료/기병인/회의 등에 한해 발급)</li> <li>▶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 (<a href="http://www.newdelhiairport.in">www.newdelhiairport.in</a>)에 등록하고, 인도 입국 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 소지 필요</li> <li>▶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칙적으로 해외 입국자는 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격리없이 14일간 자가모니터링,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 (<a href="http://www.newdelhiairport.in">www.newdelhiairport.in</a>)에 업로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li> <li>* 영국, 유럽 및 중동발 해외입국자의 경우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하고 음성인 경우 14일 자가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환승 시 일반 해외입국자와 따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되며,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환승편 탑승 허용(검사 및 결과 확인에 6-8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승편 시간 고려 필요)</li> </ul> </li> <li>- 다만 주재국 국내선 이동의 경우에는 영국, 브라질, 남아공 출발 승객은 검사결과를 확인한 이후 연결편 탑승이 가능하고, 그 외 유럽 및 중동발 승객은 검사는 공항에서 실시되어, 검사결과는 목적지에서 통보 받음</li> </ul> </li> <li>* (마하라슈트라라 뭄바이市) 유럽, 중동, 남아공, 브라질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뭄바이 공항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 시설격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유증상자의 경우 지정 병원에 입원</li> <li>- 격리 5-7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 남은 기간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li> <li>- (시설격리 예외 대상자) 65세 초과 노약자,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동반 부모, 심각한 질병이 있어 의료기관의 도움이 필요한자, 인도적 목적 입국자,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1, 2차 접종증명서 및 자가신고서 제출 필요), 위급한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의료전문가</li> </ul> </li> <li>* (타밀나두州) 영국, 브라질, 남아공, 유럽, 중동 지역을 제외한 해외입국자(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입국자 해당)는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 (<a href="http://www.newdelhiairport.in">www.newdelhiairport.in</a>)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발열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 없이 14일간 자체점검 실시</li> <li>- 영국, 브라질, 남아공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 (<a href="http://www.newdelhiairport.in">www.newdelhiairport.in</a>)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7일 자가격리 → 자가격리 종료 후 RT-PCR</li> </ul> |
| 121 | 이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li> <li>*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li> <li>* 20.8.2.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노동, 유학,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li> <li>* 유럽발(직항, 경유 모두) 항공편으로 입국 시, 출발지의 PCR 음성확인서와 별개로 현지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및 일정기간 자가격리(격리장소 : 입국 시 신고된 주소지, 격리기간 : 재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li> </ul>  |     |       |  |
| 122 | 이스라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li> <li>*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텐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10일 ~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li> <li>* 이스라엘 밖에서 백신접종을 했거나 코로나19 감염이력 있는 경우(거주국에서 발급한 입증서류로 증명) 입국 시 격리 의무 동일하나, 이스라엘 보건부에서 지정한 이스라엘 내 의료기관의 혈청검사 등 결과에 따라 격리면제 신청 가능</li> </ul>  |     |       |  |
| 123 | 이집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1.부터 항공, 육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카이로행 직항 항공편 출발 시각(경유지인 두바이 또는 아부다비 출발 시각)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이람어) 제출(만 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li> <li>* PCR 음성확인서는 우리 정부에서 인증한 검진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검진기관 도장,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채취 시점, 검사 유형(RT-PCR) 등 반드시 포함 필요(누락 시 이집트행 항공편 텁승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li> </ul>   |     |       |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7일간 자체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중동 지역에서 출발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 출발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a href="http://www.newdelhairport.in">www.newdelhairport.in</a>)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14일간 자체점검 실시</li> </ul>   |
| 126 | 인도네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9.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li> <li>* 입국 금지의 예외 : ① 법무장관령 26호(21.9.29.) 해당자(VITAS, 방문비자, 외교/관용 비자, APEC 카드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비자 소지자, KITAS(단기취업비자) / KITAP(장기체류비자)), ② TCA(필수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간소화 제도) 대상자, ③ 중앙행정기관(부, 청) 요청에 의한 특별 허가 소지자</li> <li>- 21.9.부터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지 휴대 의무</li> <li>- 인도네시아 입국 시 RT-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도착일로부터 5일간 호텔 의무 격리, 나머지 9일 자가격리(TCA 입국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격리 면제, 구체적 방안 논의 중)</li> <li>- 5일 격리 후 RT-PCR 재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다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음</li> </ul>  |
| 127 | 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li> <li>*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li> <li>▶ 21.1.14.부터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li> <li>* 모든 입국자는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li> <li>▶ 21.1.9.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li> <li>*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로 음성 확인 후 14일 자가격리(격리면제 제도 불비)</li> <li>*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 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li> <li>* 입국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한 자는 입국 불가 및 항공기 탑승 제한</li> <li>* 공항 내에서 영상통화/위치확인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서약서에 기재된 연락처의 진위 여부 확인</li> <li>▶ (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시증면제조치 정지 계속)</li> <li>▶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 · 간사이국제공항 · 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li> <li>* 제3국기발 일본 환승 관련,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기준과 동일)</li> <li>▶ 21.5.10.부터 인도, 파키스탄, 네팔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 대기, △입국 후 3일, 6일째 되는 날 각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가 확인될 경우 시설 퇴소 및 입국 후 14일이 되는 시점까지 자가격리</li> </ul>  |
| 128 | 자메이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a href="http://visitjamaica.com">visitjamaica.com</a>)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li> <li>* 모든 입국자(자메이카 국민 및 외교관 포함)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체검사) 제출, 입국 후 14일 격리 의무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b>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 :</b>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 14일간 자가격리)</li> <li>- <b>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 :</b> 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숙소 또는 정부 격리시설에서 결과 대기음성 시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li> <li>② <b>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 :</b>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 도착 후 14일간 지정된 관광 허용 구역만 방문 가능)</li> </ul> </li> <li>* 21.6.2.까지 인도,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파라과이발 여객기 입국 금지</li> </ul>   |
| 129 | 잠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기능하면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미지참 시 입국거부) 및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li> <li>* 유증상시 또는 무작위로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재실시 (비용 자부담)</li> <li>*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음</li> <li>*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li> </ul>  |
| 130 | 적도기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20.6.12.)</li> <li>* 모든 국제선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li> <li>- 공항 도착 시 신속진단키트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인 경우 5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하고, 격리기간 중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 시 5일 후 격리해제</li> <li>* 영국발 승객 입국 금지</li> </ul>   |
|     |       | <p>*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편명, 출발지 등)를 포함한 소속직원(기족 포함)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p> <p>▶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시 입국 가능(백신 종류 무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입국 신청 양식을 조지자 외교부 홈페이지상의 링크로 들어가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 필요(작성하지 않고 입국 시 공항에서 최근 14일간 방문 국가 및 연락처 등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li> <li>* 단, 인도에서 출발한 여행객 또는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 인도 방문 경험이 있는 여행객은 해당되지 않으며 입국일로부터 72시간 전 발급된 PCR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하고 자비로 14일 동안 격리</li> <li>▶ 백신 미접종자인 한국인 입국자는 비즈니스 목적(공무 포함)으로만 입국 가능(관공이나 친지 방문 목적은 입국 불가)</li> <li>* 입국 전 입국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a href="http://stopcov.ge/en/Protocol">stopcov.ge/en/Protoco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4일간 방문 국가 및 연락처 등 기재(미제출시 공항에서 작성 가능)</li> <li>- 7~10일 뒤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입국 허가 번호 및 PCR 검사, 격리 등 상세 사항 안내</li> <li>- 상기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조지아 정부 관련 부처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해당 부처가 입국 승인서를 신청자 이메일로 송부</li> </ul> </li> <li>* 항공편(제3국 경유 포함)으로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li> <li>* 입국 후 3일차에 자비로 PCR 검사 실시</li> <li>* 입국 전 14일 이내 인도를 방문한 여행객은 입국 후 14일 격리가 필수이며 입국 3일차에 PCR 검사 진행</li> </ul>  |
| 131 | 조지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li> <li>*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li> <li>-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li> <li>-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li> <li>-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li> </ul> </li> <li>▶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a href="https://www.visaforchina.org">https://www.visaforchina.org</a>)를 통해 가능</li> </ul> </li> <li>▶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li> </ul> </li> <li>*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a href="http://kr.china-embassy.org/kor">kr.china-embassy.org/kor</a>)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li> </ul> </li> </ul> </li> <li>* 건강 QR코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 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a href="https://hrhk.cs.mfa.gov.cn/H5/">https://hrhk.cs.mfa.gov.cn/H5/</a>)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li> </ul> </li> <li>*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li> <li>-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 코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a href="https://hrhk.cs.mfa.gov.cn/H5/">https://hrhk.cs.mfa.gov.cn/H5/</a>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li> <li>*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a href="http://kr.china-embassy.org/kor">kr.china-embassy.org/kor</a>)에서 확인 가능</li> </ul> </li> </ul> |
| 132 | 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28.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li> <li>*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li> <li>-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li> <li>-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li> <li>-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li> </ul> </li> <li>▶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동일한 종류의 비자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a href="https://www.visaforchina.org">https://www.visaforchina.org</a>)를 통해 가능</li> </ul> </li> <li>▶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li> </ul> </li> <li>*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혈청항체검사 실시 필요(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a href="http://kr.china-embassy.org/kor">kr.china-embassy.org/kor</a>)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li> </ul> </li> </ul> </li> <li>* 건강 QR코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 이후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혈청 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정사이트(<a href="https://hrhk.cs.mfa.gov.cn/H5/">https://hrhk.cs.mfa.gov.cn/H5/</a>)에 업로드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li> </ul> </li> <li>*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li> <li>-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 코드'를 제시해야 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a href="https://hrhk.cs.mfa.gov.cn/H5/">https://hrhk.cs.mfa.gov.cn/H5/</a>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li> <li>* 중국 입국 검역 강화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a href="http://kr.china-embassy.org/kor">kr.china-embassy.org/kor</a>)에서 확인 가능</li> </ul> </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 출입국 금지</li> <li>※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각 성·시별 방역 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바,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li> </ul> </li> </ul>  |
| 1  | 간쑤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간쑤성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비용 자부담)</li> <li>※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li> </ul>  |
| 2  | 광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광동성 진입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마카오 제외)입국자는 14일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건강관찰관리 및 핵산검사 6회(시설격리 중 4회 + 자가건강관찰관리기간 중 2회) 실시</li> <li>※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li> </ul>   |
| 3  | 광시좡족자치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간 자가 격리 + 7일간 자가 건강관리 관찰(자가격리·자가 건강관찰 기간 중 2회 핵산검사 실시)</li> </ul>  |
| 4  | 구이저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구이저우성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li> <li>※ 시설격리 후 14일 건강 모니터링 실시(시설격리 및 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5회 실시)</li> <li>※ 건강모니터링 제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며 제8~14일에는 필요 시 외출 가능하나 대중교통 탑승 자제 필요</li> </ul>  |
| 5  | 네이멍구자치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네이멍구시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PCR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li> <li>※ 네이멍구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li> <li>※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li> </ul> </li> </ul>   |
| 6  | 닝샤후이족자치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li> </ul>  |
| 7  | 랴오닝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랴오닝성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 격리 + 7일 자가모니터링 정책 시행 중, 핵산검사 최소 3회, 혈청항체검사 최소 2회 실시(비용 자부담)</li> <li>※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21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실시</li> <li>- (다롄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 + 7일 자가격리* + 7일 자가 모니터링 정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중에는 1인 1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집중 격리 연장</li> </ul> </li> </ul> </li> </ul>   |
| 8  | 베이징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베이징시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7+7” 방역정책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일 지정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PCR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li> </ul> </li> <li>※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 14일차, △추가 시설 또는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 △추가 7일 자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입국28일차)에 PCR 검사 실시</li> <li>※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난아래 베이징으로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모니터링(7일차에 PCR검사) 추가 실시</li> <li>※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li> <li>※ 21.1.27.(수) 0시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li> </ul>   |
| 9  | 산동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칭다오 공항, 엔티아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1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비용 자부담))</li> <li>※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li> <li>※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li> <li>※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엔티아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li> <li>※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 가능 확답을 받아야 이동 가능)</li> <li>▶ <b>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3-24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 관찰 + 7일간 자가격리) (비용 자부담)</li> <li>※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히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동성 공항과 동일</li> </ul> |
| 10 | 산시성(陝西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산시성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 7일간 건강관찰(외출 가능)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li> <li>※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li> </ul>   |
| 11 | 산시성(山西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산시성 도착시</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4+2” 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 2번의 혈청항체 검사(1일차, 14일차)</li> <li>※ 14일간 격리를 마친 인원은 “14+2” 방역정책 적용, 14일 자가격리, 2번의 PCR검사(1일차, 14일차)</li> <li>※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성으로 이동 가능하며, “14+4” 방역정책 적용, 14일간 시설격리, 4번의 PCR 검사(1일차, 5일차, 10일차, 14일차)</li> <li>-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li> </ul>   |
| 12 | 상하이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상하이시 도착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비용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li> <li>-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li> </ul> </li> <li>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인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li> <li>-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li> </ul> </li> <li>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li> </ul> </li> </ul>   |
| 13 | 시짱자치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짱자치구 도착 전</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li> <li>※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li> </ul>  |
| 14 | 신장위구르자치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장자치구 도착 전</b>,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 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li> </ul> </li> </ul>  |
| 15 | 쓰촨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촨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li> <li>※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3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li> <li>※ 지정시설 격리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외출 불가)하며, 건강모니터링 종료 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1회 실시</li> <li>※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li> </ul>   | 22 | 충칭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칭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li> <li>※ 시설격리 기간 비인두도말 핵산검사 3회 + 항체검사 1회 추가 실시</li> <li>※ 시설격리 종료 후 7일 건강모니터링 추가 실시(외출 가능하나 공공장소 방문, 대중교통 이용 불가)</li> </ul>  |
| 16 | 안후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후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건강관찰(또는 자가격리 가능) 및 2회 핵산검사 실시</li> <li>※ 외국에서 상하이로 입경하는 인원은 상하이에서 시설격리 3일, 안후이성 지정시설에서 11일 집중격리 후 추가적으로 7일 건강관찰(또는 자가격리) 실시</li> </ul>  | 23 | 칭하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칭하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li> <li>※ 칭하이성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li> <li>※ 경유지에서 14일간의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 실시 및 2차례 PCR검사 요망)</li> </ul>   |
| 17 | 원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내 통일된 방역정책이 부재하며 각 시·주에서 공식 발표 없이 새로운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방문지 거주단지(社區)에 문의 필요</li> <li>※ (쿤밍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4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쿤밍시로 이동한 경우 7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li> </ul> </li> <li>※ (리징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건강모니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li> <li>※ (취징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거주단지 건강모니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li> <li>※ (위시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1회 실시</li> <li>※ (푸얼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시설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4회 실시</li> </ul> | 24 | 톈진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톈진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격리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li> <li>※ 톈진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7일차-14일차, △추가 자가 격리 7일차(입국21일차)에 코로나19 검사 실시</li> <li>※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21~28일차에 톈진으로 진입하는 인원은 톈진 도착일로부터 3일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소지 필요</li> <li>※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톈진시로 이동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li> </ul> </li> </ul> |
| 18 | 장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 시설격리 후 7일 자가격리 진행(7일 자가격리는 社区에 따라 외출 가능여부와 기간이 다를 수 있음)</li> <li>※ 7+7 기간중 핵산검사 1번, 끝나고 핵산검사 1번 진행</li> </ul>   | 25 | 푸젠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젠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단,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및 핵산검사 3회 실시</li> <li>※ 일부 지역(사먼시 등)에서는 추가 혈청검사(1~2회) 실시</li> </ul>  |
| 19 | 장쑤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14일간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3일차, 7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li> <li>※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 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3일차, 7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li> <li>※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건강관찰은 위 정책대로 실시</li> </ul>  | 26 | 하이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이난성 도착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하이난에서 7일간 2차 격리(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1회 실시</li> </ul>   |
| 20 | 저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7일간 일상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li> <li>※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국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li> </ul>   | 27 | 허난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1번 핵산검사 진행)</li> <li>※ 건강관찰: 외출이 가능하지만 인원 밀집 지역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li> </ul>  |
| 21 | 지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21-28일간 지정시설 격리</li> <li>※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li> <li>※ (창춘시) 스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li> </ul>  | 28 | 허베이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li> <li>※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li> </ul>   |
|    |       |   | 29 | 헤이룽장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룽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3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li> <li>※ 지역별로 7일간 추가 자가격리</li> <li>※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격리기간 내 핵산검사 3회 + 혈청검사 1회 실시)</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136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 30 후난성  | ※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  | ▶ <b>후난성 도착시</b> ,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진행한 자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7일간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2번 핵산검사 진행) | ※ 건강관찰: 외출이 가능하지만 인원 밀집 지역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후베이성 도착시</b> ,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 시설 격리를 진행한 후 14일 건강관찰 진행(매일 체온을 체크하고 2번 핵산검사 진행)  | ※ 건강관찰: 직장과 숙소 2장소만 이동이 가능하며, 인원 밀집 지역출입과 대중교통 이용 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 ※ 입국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시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후베이성   | ▶ 20.7.17부터 국경(육해공) 재개방  | ※ 모든 내외국민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든 외국인 대상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침(음성 확인서 미지참 시 입국 불허), △유증상 시 현지에서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및 시설격리, △입국일로부터 7~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 ※ 20.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준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짐바브웨       | 135 차드  | ▶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22)   | ※ 출국 시에도 출국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5.3부터 체코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체코 보건부에서 발행한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아래표에 적시된 중위험국(오렌지색) 및 위험국(적색) 방문 후 입국 전·후 진단검사 및 격리의무 등의 부과 조치 없이 제한없는 입국 가능  | ▶ 필수적 목적 외에는 입국이 제한되며,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체코 정부의 위험국 분류에 따른 검역 조건 준수 필요  | ※ 현재 한국은 저위험국(녹색)으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체코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을 초과하여 위험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검역조건 충족 불요<br>- (필수적 목적의 입국 제한) 업무, 사업 목적 등 주재국의 이동제한 규제조치상 예외사유만 입국 허용, 입국 목적 증빙 서류 지침 필수<br>- (체코 정부의 위험국 분류에 따른 검역 조건) 위험국 분류 정보는 체코 내무부 ( <a href="http://www.mvcr.cz">www.mvcr.cz</a> )에서 확인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체코 국민과 그의 직계가족 / (체코 거주허가증 소지) EU+국민 / (체코 영주권 소지) 제3국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7 체코  |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9">진단검사(자부담)</th> </tr> <tr> <th>구 분</th> <th>입국 사전 신고</th> <th>대중 운송수단 이용 입국자<br/>(비행기, 버스, 기차 등)</th> <th>개인 운송수단 이용 입국자<br/>(개인차량 등)</th> <th>자가격리</th> <th>마스크 착용</th> <th></th> <th></th> <th></th> </tr> <tr> <th></th> <th></th> <th>입국前</th> <th>입국後</th> <th>입국前</th> <th>입국後</th> <th></th> <th></th> <th></th> </tr> </thead> <tbody> <tr> <td>최고위험국<br/>(연한축색)</td> <td rowspan="6">○</td> <td>PCR (입국72h이내)</td> <td>PCR (입국72h이내)</td> <td>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 자가격리 후</td> <td>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필수</td> <td>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td> <td></td> <td></td> </tr> <tr> <td>고위험국<br/>(진한축색)</td> <td>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br/>또는<br/>항원검사<br/>(입국24h이내)</td> <td>PCR (입국5일 이후<br/>검사)</td> <td>PCR (입국24h이내)<br/>또는<br/>항원검사<br/>(입국5일 이후<br/>검사)</td> <td>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5일<br/>자가격리 필수</td> <td></td> <td></td> <td></td> </tr> <tr> <td>위험국<br/>(적색)</td> <td>PCR (입국 5일내 검사)</td> <td></td> <td>PCR (입국 5일내 검사)</td> <td>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td> <td></td> <td></td> <td></td> </tr> <tr> <td>중위험국<br/>(오렌지색)</td> <td>X</td> <td></td> <td>항원 또는<br/>PCR검사<br/>(입국 5일내 검사)</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저위험국<br/>(녹색)</td> <td>X</td> <td>X</td> <td>X</td> <td>PES상 규제<br/>단계에 따라<br/>착용여부 결정</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진단검사(자부담)   |  |   |  |  |  |  |  |  | 구 분 | 입국 사전 신고 | 대중 운송수단 이용 입국자<br>(비행기, 버스, 기차 등) | 개인 운송수단 이용 입국자<br>(개인차량 등) | 자가격리 | 마스크 착용 |  |  |  |  |  | 입국前 | 입국後 | 입국前 | 입국後 |  |  |  | 최고위험국<br>(연한축색) | ○ | PCR (입국72h이내) | PCR (입국72h이내)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 자가격리 후 | 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필수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  | 고위험국<br>(진한축색)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br>또는<br>항원검사<br>(입국24h이내) | PCR (입국5일 이후<br>검사) | PCR (입국24h이내)<br>또는<br>항원검사<br>(입국5일 이후<br>검사)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5일<br>자가격리 필수 |  |  |  | 위험국<br>(적색) | PCR (입국 5일내 검사)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  |  |  | 중위험국<br>(오렌지색) | X |  | 항원 또는<br>PCR검사<br>(입국 5일내 검사) |  |  |  |  | 저위험국<br>(녹색) | X | X | X | PES상 규제<br>단계에 따라<br>착용여부 결정 |  |  |  |  |  |  |
| 진단검사(자부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입국 사전 신고   | 대중 운송수단 이용 입국자<br>(비행기, 버스, 기차 등)               | 개인 운송수단 이용 입국자<br>(개인차량 등)   | 자가격리  | 마스크 착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국前   | 입국後  | 입국前   | 입국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최고위험국<br>(연한축색)   | ○          | PCR (입국72h이내)                                   | PCR (입국72h이내)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 자가격리 후  | 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필수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위험국<br>(진한축색)    |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br>또는<br>항원검사<br>(입국24h이내) | PCR (입국5일 이후<br>검사)  | PCR (입국24h이내)<br>또는<br>항원검사<br>(입국5일 이후<br>검사)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5일<br>자가격리 필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험국<br>(적색)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위험국<br>(오렌지색)    |            | X   |  | 항원 또는<br>PCR검사<br>(입국 5일내 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위험국<br>(녹색)      |            | X   | X  | X   | PES상 규제<br>단계에 따라<br>착용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상기 이외) 모든 외국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   |
|-----------|----------|---|---------------|---|--|---|---|---|
| 구 분       | 입국 사전 신고 | 진단검사(자부담)                                       |               |   | 자가격리                                       | 마스크 착용                                      |   |   |
|           |          | ※ 운송수단 관계없이 동일 적용                               | 입국前           | 입국後   |  |   |   |   |
| 138 칠레    | ○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PCR (입국72h이내) | -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br>자가격리 필수 | 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br>자가격리 필수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br>자가격리 필수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br>자가격리 필수     |
|           |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PCR (입국24h이내)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5일<br>자가격리 필수     |   |   |   |
|           |          | PCR (입국5일내 검사)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   |   |   |
|           |          | X   |               | 항원 또는<br>PCR검사<br>(입국 5일내 검사)                   |  |   |   |   |
|           |          | X   | X             | X   | PES상 규제<br>단계에 따라<br>착용여부 결정               |   |   |   |
| 139 카메룬   | ○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PCR (입국72h이내)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br>자가격리 필수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           |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PCR (입국24h이내)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5일<br>자가격리 필수     |   |   |   |
|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   |   |   |
|           |          | X   |               | X   |  |   |   |   |
|           |          | X   | X             | X   | PES상 규제<br>단계에 따라<br>착용여부 결정               |   |   |   |
| 140 카보베르데 | ○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PCR (입국72h이내)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br>자가격리 필수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           |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PCR (입국24h이내)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5일<br>자가격리 필수     |   |   |   |
|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   |   |   |
|           |          | X   |               | X   |  |   |   |   |
|           |          | X   | X             | X   | PES상 규제<br>단계에 따라<br>착용여부 결정               |   |   |   |
| 141 카자흐스탄 | ○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PCR (입국72h이내)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br>자가격리 필수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           |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PCR (입국24h이내)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5일<br>자가격리 필수     |   |   |   |
|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   |   |   |
|           |          | X   |               | X   |  |   |   |   |
|           |          | X   | X             | X   | PES상 규제<br>단계에 따라<br>착용여부 결정               |   |   |   |
| 142 카타르   | ○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PCR (입국72h이내) | PCR 2회<br>-1차: 입국 후 24시간내<br>-2차: 10일<br>자가격리 후 | 음성확인서 2차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10일<br>자가격리 필수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입국 후 14일간<br>아외활동시<br>FFP2급<br>마스크 착용<br>의무 |
|           |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PCR (입국24h이내) | PCR (입국 5일 이후<br>검사)                            | 음성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br>*입국 후 5일<br>자가격리 필수     |   |   |   |
|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 PCR (입국 5일내 검사)                                 |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   |   |   |
|           |          | X   |               | X   |  |   |   |   |
|           |          | X   | X             | X   | PES상 규제<br>단계에 따라<br>착용여부 결정               |   |   |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타르 도착 전 72시간 내 출발지 보건당국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li> <li>- 카타르 공공보건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입국 직후 공항에서 추가로 코로나19 검사 실시 가능</li> </ul> <p>※ 코로나19 저위험국(한국 포함 18개국)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 △7일간 자가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후 6일 째 되는 날 재검사, 음성인 경우 입국 후 7일차에 격리 해제, 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격리 실시</li> <li>-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하고, △입국 시 유효한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하고,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확인 시 또는 도착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외국의 지정기관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되는 백신 종류는 화이자/비オ엔티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4가지에 한하여, 2차 접종(존슨앤존슨 1차)까지 유효해야만 인정</li> </ul> </li> </ul> <p>※ 코로나19 저위험국과 외국에서 출발하는 거주기증 소지 외국인의 경우, 입국 허가를 받아 지정된 호텔(사전 예약 필수)에서 7일 격리, 호텔격리 6일차 재검사하여 음성인 경우 추가 7일간 자가격리, 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타르 내 체류중인 거주자는 국외여행 후 복귀 시 호텔격리 7일 후 격리해제</li> </ul> <p>※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남아공 출발 여행객의 경우 지정된 격리 호텔 예약증이 없는 경우 카타르행 비행기 탑승 금지</p> <p>※ 시우디아리비아의 육로 국경(Abu Samra)을 통한 입국 요건 및 절차 발표(2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행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입국 후 일주일간 호텔 격리(사전에 패키지 구매 필요)</li> </ul> <p>※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출발 및 경유 입국자 대상 강화된 입국제한조치 시행(21.4.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타르행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출발지 보건당국이 승인한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비행기 탑승 불가)</li> <li>- 입국 후 지정시설에서 10일 격리(자가격리 불가)하며, 백신접종완료자 및 코로나19 완치자 대상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음(Discover Qatar 웹사이트에서 시설격리 패키지 사전 구매 필요)</li> <li>- 입국 후 1일 이내 격리시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격리 종료 전 추가 코로나19 검사 실시</li> <li>- 제3국이 최종 목적지여도 해당 6개국에서 출발하여 카타르 경유 시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 필요</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li> <li>-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녀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li> <li>※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li> <li>-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li> </ul> <p>※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li> </ul> <p>※ 캐나다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p> <p>※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승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p> <p>※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p> <p>※ 21.4.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p> <p>※ △취업 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기준의 범위 등 상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p>   |
|     |       |  | 145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li> </ul> <p>※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코로나19 증상(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확인서는 캐나다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한글 및 번역본 불인정, 검사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방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li> <li>-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a href="https://bit.ly/covid19month">https://bit.ly/covid19month</a>)에 접속, 인원별로 Travelers Health Surveillance Form을 작성한 후 각자 전송받은 QR코드를 캐나다 공항 입국 시 제공(핸드폰 또는 출력물)</li> </ul> <p>※ 캐나다 입국 이전에 <a href="https://trustedtravel.panabios.org">trustedtravel.panabios.org</a> 접속하여 계정 생성 후 음성확인서 업로드(Check in→upload lab test certificate No TT 메뉴 이용), 영문+숫자로 구성된 코드(TT 코드) 생성되면 함께 나오는 QR코드 저장, 공항에서 요구시 제시</p> <p>※ 통행금지 시간(오후10시~의일 오전 4시)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탑승권 등)을 참시 나이로비 내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p> <p>※ 캐나다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visa만 가능(21.1.1.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evisa.go.ke">www.evisa.go.ke</a>를 통해 발급 필요</li> </ul> </p> |
| 143 | 캄보디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30.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li> </ul> <p>※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며, 이때 △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FORTE보험사의 코로나19 보험가입증서, △초청장 제출(기준에 발급받은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비자 재발급 불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기 기장 및 승무원의 경우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li> <li>- 캄보디아 도착 전 3주 내 인도 체류 또는 경유한 여행자 입국 금지(21.4.27.)</li> </ul> <p>※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시 공항에서 음성확인서, 보험증 및 초청장(비자 신규발급자)을 제출하고,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지정호텔 등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결과가 나을 때까지 대기(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지부담,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 시 2,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20.6.1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18.부터 동승객 확진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보건부 지정 호텔에서 격리</li> </ul>   | 146 | 코모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시 탑승 72시간 전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li> </ul>   |
|     |       |  | 147 | 코스타리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의 항공기, 육로 투르트 이용한 입국 제한적 허용</li> </ul> <p>※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진단서 시스템상 제출(서면제출 불가),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에 보험가입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입원비) 및 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예타 국제보험 가입, △코로나19 증상 미발생</p> <p>※ 단, 육로를 통한 외국인의 입국은 코스타리카로의 무시증 입국이 가능한 국적을 보유한 경우에만 허용</p> <p>※ 영주권자 등 각 체류자격별 입국 조건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p>  |
| 144 | 캐나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li> </ul> <p>※ 21.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나다 달러의 벌금형</li> <li>-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자격리 계획 제공 필수</li> </ul> <p>※ 21.2.22.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에서 최대 3일간 대기(검사비 등 자부담, 2천캐나다 달러 이상으로 예상) 및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추가 검사 의무화</p> <p>※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li> </ul>  | 148 | 코트디부아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20.7.1.)</li> </ul> <p>※ 출입국 및 환승 시 항공여행 증명서 및 5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검체 채취일 기준) 지참, 입국 시 제시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공여행 증명서) 홈페이지(<a href="http://deplacement-aerien.gouv.ci">http://deplacement-aerien.gouv.ci</a>)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입국시 수수료 2,000 FCFA, 출국 시 수수료 50,000 FCFA 지불)</li> <li>- 출국 시 항공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포함</li> <li>-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승객은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비용 지부담)</li> </ul>   |
|     |       |  | 149 | 콜롬비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9.21.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가능</li> </ul> <p>※ 21.4.7.부터 모든 입국자(내외국인 및 언령 예외 없음)는 출발 전 96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p> <p>※ 입국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조건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li> </ul> <p>▶ 20.3.17. 이후 베네수엘라 육상 및 해상 국경 봉쇄(내외국인 모두 출입국 금지)</p>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금지</li> <li>* 콜롬비아 국적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 예외적 입국 가능하며,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li> <li>* 콜롬비아 내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없는 우리 국민이 콜롬비아 입국 전 14일 이내 인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제3국에서 14일 이상 체류 후 입국 가능</li> </ul>  |
| 150 | 콩고공화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경(육·해·공) 통제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20.6.6)</li> </ul>   |
| 151 | 쿠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 대상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자부담) 및 21.1.1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국가의 공인 시설에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li> <li>* 21.2.6.부터 입국 후 지정된 숙소에서 5일간 의무 격리(자부담)</li> <li>* 쿠바에 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 5일차에 2차 PCR 검사 실시</li> </ul>   |
| 152 | 쿠웨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li> <li>* 쿠웨이트 국적자와 직계가족, 동반 가사노동자만 입국 가능</li> <li>* 입국 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 지침(14일간 격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전 Kuwait-Mosafer(온라인 플랫폼) 등록(모든 항공사는 상기 플랫폼 미등록자 대상 텁승 금지 의무)</li> <li>- 텁승 시 PCR 음성확인서(검사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소지 및 무증상(고열, 기침 등)</li> <li>- 입국 후 14일간 의무격리 :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지정 호텔) 및 이후 7일간 자가격리</li> <li>- 입국 후 PCR 검사 2회 실시 : 쿠웨이트공항 도착 즉시 1차 검사, 시설격리 6일차에 2차 검사 실시(검사 비용은 입국자 부담)</li> <li>- 시설격리 종료 시 자가격리 앱(shelonek) 설치 및 작동</li> </ul> </li> <li>* 외교관과 가족 및 동반 가사노동자, 정부대표단, 쿠웨이트 국적 환자 및 동반자, 쿠웨이트 국적 해외유학생, 의료진과 동반가족, 18세 이하 미성년 단독 여행객은 시설격리 없이 14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2회 실시(쿠웨이트공항 도착 즉시 1차 검사, 자가격리 6일차에 2차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관 및 동반가족, 정부대표단에 한해 무상 PCR 검사 실시 및 Kuwait-Mosafer 설치 면제</li> </ul> </li> </ul>  |
| 153 | 쿡제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4.)</li> <li>* 자국 거주민, 영주권자, 워크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외교이민부 승인하에 입국 가능(20.10.30)</li> </ul>  |
| 154 | 키르기스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미소지 또는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입국 불허)</li> </ul>   |
| 155 | 키리바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20.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li> </ul>   |
| 156 | 타지키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지키스탄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비자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전 발급) 소지자 대상 입국 허가 및 자가격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타지키스탄과 정기 항공편이 운항중인 두바이/이스탄불/티슈켄트/알마티/모스크바 등을 경유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허가서 미소지자도 비공식적으로 입국 허용</li> </ul> </li> </ul>   |
| 157 | 탄자니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4.부터 모든 입국자(여행객, 체류자 포함) 대상 탄자니아 도착 72시간 이내에 검체가 체취된 RT-PCR 코로나19 음성진단서 제출 의무화</li> <li>* 모든 입국자는 탄자니아에 도착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온라인으로 여행자감시양식 작성 의무화 (온라인 링크: <a href="https://afyamsafiri.moh.go.tz/arrival">https://afyamsafiri.moh.go.tz/arrival</a>)</li> <li>* 모든 입국자 대상 신속진단테스트(인당 25USD)를 포함한 강화된 검역절차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유 여행자의 경우 제3국을 72시간 이상 경유한 경우 신속진단테스트 필요</li> </ul> </li> <li>* 모든 입국자에게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가 안내된 건강정보카드 제공 및 증상 능동감시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증상 발현시 정부지정 시설에서 검사 및 치료가 요구되며, 비용은 자부담</li> </ul> </li> <li>▶ 도착 14일 내 인도를 방문 또는 경유한 경우, 신속진단테스트 및 14일 의무격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인도 간 여객기 운행 전면 중단</li> <li>* 여행객은 정부 지정시설 중 선택(비용 자부담), 체류지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가능</li> </ul> </li> <li>▶ 탄자니아의 경우 입국제한조치를 변경하기 단 몇 시간 전에 발표하고 적용하고 있는 바, 방문 전에 수시로 항공사 및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요망</li> </ul> |
| 158 | 태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대상 제한적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2.17. 기준 입국 가능한 경우) 스탠다드 총리의 초청 및 허기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스탠다드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스탠다드 영주권자,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스탠다드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X Card 소지 한국인, 스탠다드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운동 선수</li> </ul> </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국 입국 전)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체, △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COE),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li> <li>* (태국 입국 후 조치) △입국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지침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 지정 호텔(ASQ)에서 최소 <b>14일간</b> 격리(자부담) 및 관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3회) (5.1.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4일로 격리기간 연장 - 기준 7일(백신접종), 10일(백신미접종) 격리기간 적용 해제)</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3.1.부터 수완나품 공항에서 국제선 간 환승 허용</li> <li>* (구비서류)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태국 도착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가입증명서</li> <li>* (환승시간 및 대기장소) 방콕 도착 후 12시간 이내 환승해야 하며, 공항 내 지정구역(Concourse E)에서만 대기 가능</li> <li>* 환승 좌석 판매 여부시기 등에 대해서는 각 항공사에 사전 문의 요망</li> </ul>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0.부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파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사증 및 COE(입국허가증) 발급 점점 중단</li> <li>* 태국 영주권자 및 외교관(동반가족 포함)은 입국허가증을 발급하나, 입국 후 최소 14일 격리 의무</li> </ul>  |
| 159 | 토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li> <li>*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a href="https://voyage.gouv.tg/checkphone">https://voyage.gouv.tg/checkphone</a>) 작성(로메공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19 PCR 검사 신청,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 완료 필요</li> <li>*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19 PCR 검사 의무 실시,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30일간)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li> <li>▶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국) 입국전 5일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a href="http://www.voyage.gouv.tg">http://www.voyage.gouv.tg</a>)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제, △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 △코로나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입국 허용</li> <li>(출국) 출국전 5일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li> </ul> </li> </ul> |
| 160 | 통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0.)</li> <li>*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li> </ul>   |
| 161 | 투르크메니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단 및 공무 목적(기업인 등) 입국자를 제외한 <b>모든</b>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항체증명서 제출 요구 및 투르크메니반 별도 시설에서 격리 조치</li> <li>* <b>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시 7일간 자택격리 가능</b></li> </ul>   |
| 162 | 투발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li> <li>* 예외적인 조건(의약품, 인도주의 등)으로 입국 시 14일간 의무격리</li> </ul>  |
| 163 | 튀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7.-6.6.간 모든 입국자는 스텁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신속검사 실시, △입국 후 지정 호텔(자부담)에서 7일 의무 격리*, △공항 체크인 시 격리 지정 호텔 예약증 및 결제확인서 제출</li> <li>* 격리 5-7일 중 실시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호텔측에 음성결과서 제시 필요)</li> <li>* (백신접종자) 2회 접종자 및 감염 후 1회 접종자의 경우, 지정호텔이 아닌 자택에서 격리 가능(단, 접종확인서 및 자가격리 서약서 제출)</li> <li>* 지정 호텔 목록 및 격리 예외 사유 등 상세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li> </ul>  |
| 164 | 트리니다드토바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3.)</li> <li>*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20.5.9.)</li> </ul>  |
| 165 | 파나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12.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해제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 재개</li> <li>*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체검사)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전 신속진단검사를 시행(\$50 USD 자가 부담), △음성 판정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불요, △양성 판정일 경우 지정시설 내 14일간 자가격리</li> <li>- 격리 중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재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종료</li> </ul> </li> <li>* 최근 20일 이내 영국 및 남아공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금지(20.12.21.)</li> <li>- 파나마 국적자 또는 거주증 소지 외국인의 경우 PCR 또는 신속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보건당국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별도 지정 시설에서 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남아공, 인도, 남미발 입국자(방문·경유)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및 입국 시 공항에서 진단검사(85불 개인부담) 시행 (2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 판정일 경우) 자택 또는 지정시설 내 3일간 자가격리 및 3일차에 진단검사 추가 시행, 음성 판정일 경우 격리 해제</li> <li>- (양성 판정일 경우) 14일간 별도 지정 시설에서 격리</li> </ul> </li> </ul>  |    |       | <p>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의무(최초 탑승 항공편명 및 좌석번호 입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EU+ 외의 안전국가지역(한국 포함)&gt;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 시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가능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및 홍콩, 마카오</li> <li>- 단, 한국에서 출발했더라도 포르투갈에서 자가격리 의무를 적용 중인 국가에서 환승해 입국하는 경우 14일 자가격리 또는 지정시설에서 격리 의무</li> </ul> </li> </ul>  |
| 166 | 파라과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21.부터 공항을 통한 입국 제한적 허용(20.10.15.부터 브라질 국경 도시 3개에 한하여 육로를 통한 상업·관광 목적 일시 입국 허용)</li> <li>* 파라과이-브라질 육로국경(우정의 다리)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4시간 개방, △차량 및 도보를 통한 입국 허용, △입국 지점부터 30km 이상 이동 시 자가건강신고서(자가격리 주소 기재 필수) 제출</li> </ul> </li> <li>* 입국 전 24시간 내 자가건강신고서 제출(www.visalud.gov.py/dvcf) 및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LAMP/NATT 형식 검사) 제출(10세 미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불요</li> </ul> </li> <li>*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국제의료보험 가입(부모 중 한명이 파라과이 국민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제외)</li> <li>* 파라과이 입국 전 14일-90일 내 코로나19 원치 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원치판정서 (RT-PCR/LAMP/NATT 형식 검사) 제출(이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및 자가격리 불요)</li> <li>* 내국인 및 영주권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 하나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필요(결과 미제출 시 벌금 부과)</li> <li>* 음성확인서 제출 일시적 면제 요건(단, 입국 24시간 내 PCR 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도적 사유(주재국 국방위를 통해 사전 승인 필요), △가족 중 파라과이 국적자가 있는 경우, △외교관 및 그 가족</li> <li>- 입국 24시간 내 실시한 검사가 양성인 경우 자택, 보건호텔, 임시보호시설에서 10일간 자가격리</li> </ul> </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EU+ 및 셀프 국가 5개국(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스웨덴)과 제3국 중 인도, 남아공, 브라질&gt;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입국시(필수목적 방문만 허용), 14일 자가격리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150 이상 500명 미만 19개국*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li> <li>*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토스부르크, 폴란드, 루마니아, 스위스</li> <li>-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500명 이상 9개국*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입국 후 자택 또는 보건당국 지정시설에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단, 필수적 목적 방문 및 포르투갈 내 체류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 의무 예외(귀국항공권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아공, 브라질,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프랑스, 인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li> </ul> </li> <li>- 21.5.1.부터 포르ту갈-스페인간 국경 개방</li> </ul> </li> <li>* &lt;EU+ 및 상기 안전국가지역 이외 제3국&gt;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 시 비즈니스(출장), 유학, 가족방문, 의료, 인도적 사유 등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 허용(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불허) : 입국 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5.16간 포르ту갈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면제</li> </ul> </li> </ul> |
| 167 | 파키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5.부터 파키스탄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RT-PCR 음성확인서 제출</li> <li>* 단, NCOO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카테고리0에 속한 국가별 승객들은 파키스탄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테고리C 국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가나, 케냐, 코모로, 모잠비크, 잠비아, 탄자니아, 르완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 칠레,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레소토, 밀라우, 세이셸, 소말리아,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인도</li> </ul> </li> <li>* 20.10.5.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20.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현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자가 격리 요구 가능</li> </ul> </li> <li>* 모든 입국자들은 파키스탄 도착 전 Pass Track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6.5.까지 모든 입국자 10일 자가격리 의무(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은 유지)</li> <li>* 스페인지역 입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는 10일 자가격리 의무</li> <li>- 단, 입국 전 48시간 내 발급된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폴란드어 또는 영어) 소지자는 자가격리 면제</li> <li>- 음성확인서 미소지시에도 폴란드 입국 후 희망지에 한해 PCR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li> <li>- 접종증기와 상관없이 EU지역에서 승인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내용의 증명서(폴란드어 또는 영어) 지참시 자가격리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리제네카 2회차 접종 완료자/ 안전 1회 접종자</li> </ul> </li> </ul> </li> <li>* 非스페인지역 입국자(한국발 입국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입국자는 10일 자가격리 의무</li> <li>- 출발국가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 소지시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li> <li>- 단, 폴란드 입국 후 희망지에 한해 PCR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li> </ul> </li> <li>* 인도, 브라질, 남아공발 입국자(특별관리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자가격리 의무</li> <li>- 단, 폴란드 입국 후 희망지에 한해 PCR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시 자가격리 해제되나, 검사는 자가격리 실시 7일 이후부터 가능</li> </ul> </li> </ul>   |
| 168 | 파푸아뉴기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2.)</li> <li>*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에 한해 입국가능(20.6.17.)</li> <li>*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결과(PCR) 필요(20.7.20.) /출발 24시간 이전 e-Health Form 제출 및 바코드 소지</li> <li>* 모든 입국자 대상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체부담) / 통제관 승인자에 한해 자가격리 가능</li> <li>* 격리기간 추적조사를 위한 비용 자체부담(휴대폰 애플리케이션 1일 40基나, 전자발찌 100基나)</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회원국, 스펙인국가, 우리나라 포함 7개국*에서 출발하는 우리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서약서** △국제이동확인서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li> <li>**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li> </ul> </li> <li>* 불가피한 여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li> </ul> </li> </ul>   |
| 169 | 팔레스타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2.26.)</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회원국, 스펙인국가, 우리나라 포함 7개국*에서 출발하는 우리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서약서** △국제이동확인서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li> <li>**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li> </ul> </li> <li>* EU회원국, 스펙인국가 및 상기 7개국 이외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우리국민 포함)이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여행 사유를 만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피한 여행 사유</li> <li>(1)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li> </ul> </li> </ul>  |
| 170 | 페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증 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사전에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수령 필요)</li> <li>* △페루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antigeno)) 지참, △여행자 건강상태확인서 및 자가격리 관련 서약서 작성(페루 이민청 온라인 제출), △페루 출입국 시 여행 출발 48시간 이내에 페루 이민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입국 사전등록' 실시</li> <li>* 21.1.4.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후 항원(antigeno)검사 실시(자비 부담)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li> </ul> </li> <li>* 21.5.30.까지 인도남아공브라질에서 출발(경유)하는 비거주 외국인 입국 제한</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회원국, 스펙인국가, 우리나라 포함 7개국*에서 출발하는 우리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서약서** △국제이동확인서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li> <li>**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li> </ul> </li> <li>* EU회원국, 스펙인국가 및 상기 7개국 이외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우리국민 포함)이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여행 사유를 만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가피한 여행 사유</li> <li>(1)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li> </ul> </li> </ul>  |
| 171 | 포르투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5.17-5.30.간 출발지에 따라 아래 조치 적용(관련 상세 내용은 주포르투갈대사관 홈페이지 참고)</li> <li>* 모든 승객은 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에서 체크인 후, 항공편 탑승</li> </ul>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회원국, 스펙인국가, 우리나라 포함 7개국*에서 출발하는 우리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서약서** △국제이동확인서 제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li> <li>**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li> </ul> </li> <li>* 불가피한 여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li> </ul> </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p>(VLS)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프랑스 출국이 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p> <p>(2)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탈퇴협정 대상 재외 영국인 및 그 가족(프랑스 출국이 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p> <p>(3) 가족합류, 또는 난민/무국적자 가족통합자격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은 제3국 국적자(한국 포함)</p> <p>(4)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모집된 외국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p> <p>(5) 특별재능여권(Passeport talent) 장기체류비자 소지자</p> <p>(6) 고등교육기관(대학교) 2학기를 위해 프랑스에 정착하려는 학생, 연구소에서 초청 받아 반드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필요한 연구원</p> <p>(7) 프랑스 내에서 사용되거나 경유될 물품을 운송하는 운전자를 포함한 교통 및 운송부문 종사자(육로, 해상, 항공 포함) 및 출발지로 이동하는 경우</p> <p>(8) 외교, 영사임무 또는 프랑스 내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또는 정부의 임무명령에 따라 필수적인 직업적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p> <p>(9) 제3국(한국포함) 국적자로 24시간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내에서 경유하는 경우</p> <p>(10) 혼인이나 동거계약(pacs)을 맺은 커플 중 직업적 사유로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p> <p>(11)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학업중인 미성년 학생</p> <p>(12) 자녀가 있으면서 한 명이 해외에 거주하는 커플</p> <p>* 탑승 전 72시간 이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국제이동확인서, △서약서* 제시 필요</p> <p>*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이다.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p> <p>▶(단순경유) 24시간 이내 국제화승구역(ZONE INTERNATIONALE)에만 머물 경우 경유 가능하며, 경유시에도 국제이동확인서 및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p> <p>▶프랑스 본토에서 프랑스의 해외영토 이동 시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필요</p> <p>▶21.5.16. 현재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남아공, 인도,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레이트, 네덜란드, 페루, 카타르, 스리랑카, 터키, 바레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우루과이에서의 입국자 입국조치 강화</p> <p>* 프랑스 및 EU 거주민 또는 필수적 사유에 의한 입국만 허용</p> <p>* △도착 36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필요 △입국시 형체 검사 시행 △10일 격리 엄격 시행(입국 전 주소 제출, 입국 시점 주소 재확인, 경찰 감시 등)</p> <p>▶격리증에는 10:00-12:00에만 필수품 구입을 위한 외출이 가능하며 위반 적발시 1500유로 벌금 부과 예정</p>                                 |
| 174 | 파지    | <p>▶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불가하나, 피지 총리실로부터 특별입국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borderrequest@mmi.gov.fj)</p> <p>*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및 입국 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자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시설이 아닌 정부 관리 격리시설(호텔, 리조트 등)에서 격리 가능(자부담, crmt@tovnet.gov.fj)</li> <li>-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2회 실시(자부담)</li> </ul>  |
| 175 | 필리핀   | <p>▶21.5.1부터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허용</p> <p>* 다만, 은퇴비자(Special Resident and Retirees Visa)와 단기방문비자(9a) 소지자는 도착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 제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ntry Exemption)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추가 입출국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li> </ul> <p>* 스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p> <p>* 상기에도 불구하고 21.5.31까지 인도, 페루,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스리랑카, 오만, UAE 출발 승객 또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p> <p>▶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 입국 가능 시, 입국 전 및 입국 후 하기 조치 필요</p> <p>* 지정된 속소시설 최소 10박 사전 예약</p> <p>* 지정숙소는 <a href="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a>에서 확인 가능하며,</p>   |
|     |       | <p>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 거절</p> <p>*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 되는 날 시설격리가 해제되며, 이후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 하에 자가격리로 전환</p>  |
| 176 | 헝가리   | <p>▶21.5.23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p> <p>* 단, 영주권, 거주증 등 형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 후 10일 자가격리)</p> <p>*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 가능(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p> <p>* 외교, 공무,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가능(해당 목적 입국 시 격리면제)</p> <p>* 웰컴협약을 따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단,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p>  |
| 177 | 호주    | <p>▶20.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20.3.19.)</p> <p>*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시설격리</p> <p>* 21.1.8.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p> <p>*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20.5.1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li> <li>-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li> <li>-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li> </ul>  |
| 178 | 홍콩    | <p>▶최근 21일 이내 영국, 아일랜드 방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포함 여타 국가(중국, 마카오, 대만, 호주, 뉴질랜드 제외) 방문 후 입국한 홍콩 비자 무소지자(여행객 등) 입국금지</p> <p>* 최근 21일 이내 브라질, 인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공에 2시간 이상 머문 경우 모든 사람(홍콩 거주자 포함) 입국 금지</p> <p>▶홍콩 입국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정부지정호텔에서 의무격리 및 전자손목밴드 착용, △선박 및 항공 승무원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지 소지 및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및 결과 확인 후 이동</p> <p>* 최근 21일내 「영국, 아일랜드」에 머문 홍콩 거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탑승 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21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간 능동감시, △도착 26일째 코로나19 재검사</li> </ul> <p>* 최근 14일내 「방글라데시, 벨기, 캐나다, 에콰도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미국,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일본, 캐나,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에 머문 홍콩 거주자(대만-여행객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 미완료자 : △탑승 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21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li> <li>- 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백신접종증명서, △탑승 전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및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14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간 능동감시, △도착 16, 19일째 코로나19 재검사</li> </ul> <p>* 최근 14일내 「호주, 뉴질랜드」에 머문 모든 사람(여행객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 미완료자 격리 및 검역 조치 :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14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간 능동감시, △도착 16, 19일째 코로나19 재검사</li> <li>- 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격리 및 검역 조치 : △백신접종증명서 및 △7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7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2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간 능동감시, △도착 12일째 코로나19 재검사</li> </ul> <p>* 최근 14일내 중국/마카오에 머문 모든 사람(여행객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접종 미완료자 격리 및 검역 조치 : △14일간 자가/정부지정호텔 아닌 숙박시설 의무격리, △도착 후 지정일 코로나19 검사(육로-2,12일/항공-도착 당일,12일)</li> </ul> |

| 번호 | 국가·지역 | 조치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격리 및 검역 조치 :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7일간 자가/정부지정호텔 아닌 숙박시설 의무격리, △도착 후 지정일 코로나19 검사 (육로-2,12일/항공-도착 당일,12일), △격리 후 7일간 능동감시</li> <li>* 최근 14일내 「우리나라 등 위에 언급되지 않은 국가」에 머문 홍콩 거주자</li> <li>- 백신 접종 미완료 자격리 및 검역 조치 :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21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4차례 코로나19 검사</li> <li>- 백신 2회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격리 및 검역 조치 : △백신접종증명서 및 △14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14일간 의무격리, △격리 중 3차례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7일간 능동감시, △도착 16, 19일째 코로나19 재검사</li> </ul> |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밀줄 국가는 非 쟁기협약 가입국)

\* 쟁기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밀줄 국가는 EU 회원국)

##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10개 국가지역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
|-----|---|
| 유럽  | ▶ 네덜란드(20.7.1) <sup>①</sup> , 루마니아(20.8.5) <sup>②</sup> , 리히텐슈타인(20.7.20), 크로아티아(20.12.1) <sup>③</sup> , 북마케도니아(20.6.26) <sup>④</sup> , 슬로베니아(20.9.29), 알바니아(20.7.1) <sup>⑤</sup> , 사이프러스(21.4.8) <sup>⑥</sup> , 터키(21.5.3) <sup>⑦</sup> , 핀란드(21.5.5) <sup>⑧</sup> |

① 네덜란드 : 출발지, 연령, 국적 불문 네덜란드 출입국 및 경유 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Declaration Form) 지침

\* EU 외국국가로부터 입국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일부 예외 인정 : EU 또는 쟁기 국가 국민, EU 또는 쟁기 국가 발급 체류증 또는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학업, 연구, 직업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중요한 사유(배우자 출산, 직계가족, 장례식 등)에 의한 가족 방문, △경유 승객,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국 체류자 등은 네덜란드 입국 가능

\* (코로나19 저위험국\*발 입국자)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입국 후 자격리 불요

\* 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중국(마카오 및 홍콩 포함, 상호주의 조건),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핀란드, 몰타, 아일랜드, 스페인 발레이루스 제도, 그리스 북에게주, 네덜란드령 카리브(St Maarten, Saba, St Eustatius, Aruba, Curacao)

\* (코로나19 고위험국발 입국자) △입국 시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NAAT\* 음성확인서 및 출발 24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신속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 24시간 이내 실시한 NAAT 음성확인서를 지참, △입국 후 자격리 10일(격리 5일 후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PCR, RT PCR, LAMP, TMA, mPOCT 포함하나, 혈액검사는 불인정

- 예외 대상 : 13세 미만 어린이, 외교관 여권 소지자, 초국경 근로자 및 학생 등

- 경유 승객은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NAAT 음성 확인서 지참(신속검사 음성확인서 불요)

- 상기 음성확인서는 항공기 탑승 전 및 네덜란드 도착 후 입국심사 시 확인

\* 21.6.1까지 아래 국가 출발 여객기 입국 금지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 아프리카 : 남아공 / 인도(21.4.26. 18시부터. 화물기, 의료진 수송, 자국민 송환 등은 예외)

② 루마니아 : 해외입국자 출발국기를 Green, Yellow, Red zone으로 세분화하여 검역조치 적용하며, yellow zone, red zone에 속한 국가의 경우 자격리 14일 의무 부여

\* 한국은 Green zone에 포함되어 루마니아 입국 시 자격리 의무 면제

- Green zone: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불요(5.14 총리 언급)하나, 항공사 또는 중간 경유지 등에서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있어 지참 권고

\* Yellow zone: ①PCR 음성확인서 또는 ②입국 최소 10일 전 백신 2회 접종 완료(증명서 지참) 시 자격리 면제

\* Red zone: 입국 최소 10일 전 백신 2회 접종 완료(증명서 지참) 시에만 자격리 면제

- Red zone에서의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로만 자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협상 등을 위한 경제활동 종사자에만 국한

\* 인도에서 입국 시 자격리 면제 미적용

③ 크로아티아 : 21.5.31까지 EU/쟁기지역발, △EU 외국경 통제해제 대상국발, △기타 비EU/비쟁기지역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탄자니아(진지바르), 인도발 입국자별로 구분하여 입국제한 치등 조치 실시(5.15.)

\* EU/쟁기지역발 입국자

-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지정 인전국가(녹색지역)발 입국자: 제한없이 입국 가능(단, 비인전국가를 경유한 입국자는 경유지 미체류 사

### 실 증빙 필요)

- 기타 지역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음성확인서,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 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 확인서(접종증명 14일 경과자만 해당), △의사발급 원치확인서, △입국일 이전 11~180일 사이에 발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중 1개 소지시 입국 가능하며, 미소지시 입국 후 자격리(10일) 실시 또는 자격리 기간 중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 EU 역외국경 통제해제 대상국발(한국 포함) 입국자
  - 코로나19 관련 무증상 및 확진자 비접촉자는 별도 제한없이 입국 가능(단, 상기 통제 해제 대상국 이외의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는 경유지 미체류 사설 증빙 필요)
- ▶ 기타 비EU/비행기지역발 입국자
  - EU/쟁기지역 국민 및 장기체류자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PCR음성확인서, △진단검사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EU 인정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백신접종증명 확인서(접종증명 14일 경과자만 해당), △의사발급 원치확인서, △입국일 이전 11~180일 사이에 발급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 중 1개 소지시 입국 가능하며, 미소지시 입국 후 자격리(10일) 실시 또는 자격리 기간 중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 상기 코로나19 관련 증명서류를 소지한 부모동반 6세 이하 아동은 증명서류 소지 불요
  - ▶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탄자니아(진지바르), 인도발 모든 입국자
    - 입국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여 입국한 후, 14일간 자격리 또는 6일 격리 후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 경유자가 12시간 내에 미출국시 의무 자격리 실시

④ 북마케도니아 : 해외입국자 대상 별도의 자격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입국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37도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발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의무적 자격리 시행 필요

⑤ 알바니아 : 단, 그리스는 알바니아에 대한 해상, 육로 이동을 전면 제한(항공의 경우 아테네 국제공항에서만 이착륙 허용), 출국 전 항공사별로 별도 요구사항 확인 필요

⑥ 사이프러스 : 각 국가를 Green, Orange, Red, Grey 범주 국가로 구분하여 Green, Orange, Red 범주 국가로부터의 입국 원칙적 허용, Grey 범주 국가의 경우 예외적 입국 허용

\* 한국은 21.4.8. 기준 Green 범주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출발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 입국 후 자격리 면제

\* 모든 승객은 출발 전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www.cyprusflightpass.gov.cy](http://www.cyprusflightpass.gov.cy))에서 승객위치확인서 등 제출 의무

⑦ 터키 : 20.12.28부터 터키 입국 시 출발 국가와 무관하게 항공편 탑승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6세 미만 아동 제외)

\* 21.5.17.부터 한국, 홍콩, 중국, 대만,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이스라엘, 일본, 영국,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에서 터키로 입국하는 자에 대해서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상기 조치는 출발지 기준으로 입국자의 국적과 무관

\* 경유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적용(단,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 21.3.14.부터 모든 입국자 ([register.health.gov.tr](http://register.health.gov.tr) 통해) '입국신고서' 작성 의무

- 단, 흰승 승객은 작성 불요

\* 21.4.22.부터 최근 10일 내 인도, 브라질, 남아공 방문 후 터키에 입국한 모든 승객은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 격리 의무

⑧ 핀란드 : 21.1.27.-21.5.25. 기간 동안 역외 국가 중 8개국(한국, 아이슬란드, 바티칸, 호주,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의 거주자의 경우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

\* 21.5. 핀에어 항공사는 핀란드 국경수비대(RAJA)에서 발표하는 국경통제 기준 'normal' 인 국가(한국 포함)에 한해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보하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경통제 기준이 수시 변동되고 있으므로 출발 전 반드시 핀란드 국경수비대 홈페이지 추가 확인 필요. 끝.